

# 『환경보호법 시행령 제48/2026/ND-CP호』

2025. 3. 25.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베트남	전년도 수출액 (천불)	37,002,912 (2025)
작성기관	한국인정평가원	문의처	tbt@kotica.or.kr

# 규제 요약서

##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EIA) 및 환경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한편, 폐수 모니터링, 폐기물 관리, 점검·감독 등 환경 사후관리를 강화함
- (적용범위) 오염위험 업종, 수입 폐기물 사용 사업자,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배출가스 배출시설 등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사업분류 체계의 구체화) 사업 부지 및 수면 면적, 업종 위험도, 환경민감도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고 인허가 기준을 차등 적용함
  - (자동 모니터링 의무 확대) 오염위험 업종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자동 측정, 데이터 전송 등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함
  - (수입 폐기물 관리) 수입 폐기물은 자가 생산 원료용으로만 허용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이 허용됨
- (인증정보)
  - (환경 인허가 절차) 사업 유형(Group I~IV)에 따라 EIA 승인, 시설 시험운전(최대 6개월), 환경 허가 취득·조정 절차를 수행함
  - (유효기간)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기관 인증은 60개월간 유효하며,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환경허가 조정 또는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 (기타사항) 모니터링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한국) 환경매체별 개별법과 일부 통합허가 제도를 병행하며,

사업장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과 1일 폐수배출량 기준에 따라 1~5종으로 구분·관리함

- (중국) 중국은 오염배출허가제(排污许可)를 중심으로 고정오염원을 중점·간소화·등록관리로 구분하고, 자동 모니터링 및 실시간 데이터 전송 의무를 통해 사후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EU) EU는 산업배출지침(IED)에 따라 대규모 산업시설의 대기·수질·토양 오염을 BAT 기반 통합허가 방식으로 관리하고, 수질은 물관리기본지침(WFD) 및 도시폐수처리지침(UWWTD) 중심으로 규율함

##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본 규제는 제품 규격보다는 사업장 중심의 환경관리 규제 성격이 강하여 자동 모니터링 설비 구축, 데이터 전송체계 운영에 따른 설비투자 및 유지관리 증가와 더불어 수입 폐기물 사용 제한에 따른 원료 조달 및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권고사항) 자원환경부(MONRE)와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통합된 농업농촌환경부(MAE) 관할 체계에 맞춘 대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2033년 플라스틱 수입 금지에 대비한 원료 조달망 확보가 필요함

## □ 대응 방안

- 기업(중소·중견·대기업) 규모별 전략
  - 기업은 부록 II 업종 해당 여부, 폐수·배기가스 배출기준, 자동 모니터링 설비 도입, 수입 폐기물 용량 관리, 실시간 환경 데이터 대응체계 등을 종합 점검하여 환경허가 대상 여부와 규제 이행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33년 플라스틱 수입 금지 등 중장기 규제 변화에 대비해 원료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재편 전략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 목 차

요약문 .....	1
I. 규제 개요 .....	2
II. 규제 세부 내용 .....	5
III. 관련 인증 정보 .....	14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7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7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	21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23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23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25
VI. 대응 방안 .....	26
참고 1 참고자료 .....	27
참고 2 규정(부속서) 원문 번역본 .....	28

##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Implement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Decree No. 08/2022/NĐ-CP – Amendment –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mitting, environmental registration and waste management) Decree No. 48/2026/NĐ-CP	
	국문	환경보호법 시행령 제08/2022/NĐ-CP호 - 개정 - (환경영향평가, 허가, 환경등록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48/2026/NĐ-CP호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베트남
채택(예정)일	2026.01.29	시행현황	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6.01.29	통보일(고시일)	2026.01.29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의견수렴 미진행
총 수출액 (천불)	580,446,215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37,002,912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환경부(MA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 (기존 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 통합)</li> </ul>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허가 권한의 일부를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양하며, 사업장 중심의 환경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 단위의 환경관리 규제 성격이 매우 강하며 모니터링 설비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비와 원료 조달 방식 변화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함</li> </ul>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개정은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아닌 베트남 내 사업장 단위의 환경 관리·인허가 규제임. 특히 환경허가, 자동·연속 모니터링, 시험 운전, 사업변경 시 허가조정 등 운영단계 의무가 확대되어 베트남 소재 기업의 행정·설비 대응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li> </ul>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소재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인허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에 폐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베트남 소재 기업에 대한 설계용량 80% 범위 내 사용 규제 및 2033.12.31.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에 따라 수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제한·금지에 대비하여 현지 원료 조달망 확보, 대체 원료 검토, 재활용 원료 사용구조 점검 및 환경허가·모니터링 의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함</li> </ul>	

# 1

## 규제 개요

### □ 도입배경

- 동 개정은 「농업·환경 분야 15개 법률을 개정한 상위법(제146/2025/QH15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존 시행령 제08/2022/ND-CP 및 제05/2025/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여 환경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제고함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재조정을 통해 일부 인허가 권한을 성(省)급 인민위원회\*로 이양하고, 행정절차의 분산·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의 유형·규모·입지 및 환경민감성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함
  - \* 성(省)급 인민위원회: 베트남의 성·직할시 수준 지방정부로, 인허가 권한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 특히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허가\*\*(EL, Environmental License), 산업단지 폐수처리, 유해폐기물 관리, 자동·연속 모니터링, 불시점검 등 환경규제 전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제 적용의 명확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 환경영향평가(EIA): 프로젝트 분류(부록 III, IV 및 부록 II 업종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토지·수면 이용 면적 기준(300ha/50ha) 및 환경민감 지역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 환경허가(EL): EIA 승인 이후 또는 사업 가동 전 취득해야 하며, 배출시설의 기술 사양, 오염 저감 설비, 환경관리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폐기물 수입 제한, 자동·연속 폐수 모니터링 대상 조정, 에코라벨 및 녹색분류체계 정비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녹색성장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목적이 반영됨

## □ 규제 요지

- 동 개정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산업단지 폐수처리, 유해폐기물 관리,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환경 관리 전반에 걸친 행정 절차와 기술적 이행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함
- 사업의 규모·입지·배출량에 따른 프로젝트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省)급 인민위원회 등 지방정부의 환경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책임 관리 체계를 구축함
- 수입 폐기물의 용도를 자가 생산 원료용으로 엄격히 제한(설계 용량의 80% 이내)하고, 2033년 12월 31일부터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시장 진입 규제를 도입함
-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 및 경찰 합동 단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후관리 및 법 집행 체계를 강화함

## □ 적용대상

- 동 규제는 특정 품목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술규제라기보다, 해당 품목을 생산·가공·취급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업종, 공정, 배출량 및 폐기물 처리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환경 규제에 해당함
- 관련 HS 코드는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음
  - (수입 폐기물 사용 사업자) HS 3915, 4707, 7204, 7404
  - (부속서 II 해당 오염위험 업종: 금속·제지·화학·섬유·염색 등) HS 72~73, 47~48, 28~31, 50~60
  - (정유·화력발전·석탄·가스 생산 관련 시설) HS 2701~2711
  - (석면·PCB 함유 물질 및 관련 폐기물 처리 사업장) HS 2524, 3824.91
  - (배터리·전자제품 제조 및 도금·세척 공정 포함 시설) HS 8506~8507, 8471, 8517
  - (주류·수산물 가공·도축·사육 관련 시설) HS 2203~2208, 03, 16, 01-02

※ 상기 HS 코드는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 공정, 배출량 및 폐기물 처리방식 등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음

□ **시행일**

○ 본 시행령은 공포일인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

## 2

## 규제 세부 내용

### □ 규제 세부내용

- 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허가 기준 구체화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사업 분류 체계의 구체화) 토지·수면 이용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 면적에 따라 대규모(300ha 이상), 중규모(50ha 이상 300ha 미만), 소규모(50ha 미만)로 분류 기준을 명확화하였으며, 업종형 사업에 대해서는 부록 II에 따른 생산능력·처리용량 등 업종별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규모와 특성을 판단하도록 함(제5조, 부록 II)
    - (환경민감요소 반영에 따른 분류기준 강화) 환경민감요소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일반 지역보다 엄격한 분류 기준을 적용 하며, 이에 따라 사업 유형·규모 및 입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해당 사업이 부록 III 또는 부록 IV에 따른 어느 사업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함(제5조, 부록 III, 부록 IV)
- \* 환경민감요소가 있는 지역: 도시 내 구역(phường), 자연보전구역, 특수용도림, 보호림, 천연림이 있는 토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중요습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역 등
- (심사 권한의 성(省)급 이양 및 행정 효율화) 국회·총리 승인 대상이 아닌 일정 공공투자사업, 수력발전사업,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 및 환경허가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양함(제7조)
  - (사업 내용 변경 시 재검토 및 조정 기준 마련) 사업 변경으로 배출량 증가, 환경영향 증대 또는 공정기술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승인사항의 재검토 또는 환경허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제8조)
  - (유연한 EIA 수행 방식 도입) 단계별 또는 분할 추진 사업의 경우 단계별 환경영향평가 또는 통합 환경영향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9조)

※ 참고: 제5조·부록 II에 따른 분류와 부록 III·IV에 따른 사업군 판정 결과를

기초로 「환경보호법」 제30조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최종 판단됨

- 환경허가 및 배출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제10조, 제24조)
  - 생산능력 확대, 공정 변경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환경허가 조정·재발급 절차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신청 절차를 명시함 (제10조)
  - 생활폐수 3m<sup>3</sup>/일 이상, 부록 II 해당 오염우려 업종의 산업폐수 10m<sup>3</sup>/일 이상,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를 함께 배출하는 경우 5m<sup>3</sup>/일 이상, 또는 배출가스 5,000m<sup>3</sup>/시간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제24조)
  
- 산업단지 폐수처리 및 환경 인프라 요건 강화 (제19~20조)
  - 산업단지 내 공동 폐수처리시설 사용 요건 및 유량계 설치 등 관리 기준을 명확화함
  - 공동 폐수처리시설이 없거나 관련 환경 인프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 프로젝트 유치 또는 기존 사업 확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수입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제18조, 제23조)
  - 수입 폐기물은 자가 생산용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량은 해당 시설 설계용량의 80% 이내로 제한함
  - 2033년 12월 31일부터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이 금지되며, 유해폐기물은 적격 처리업체를 통한 연계 처리는 가능하나 제3자 재위탁은 금지됨
  
- 자동·연속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제11조, 제28조)
  - 폐기물처리시설 시험운전 기간을 최대 6개월(불가피한 경우 1회 연장 가능)로 하고, 기간 중 오염물질 측정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함
  - 오염위험 업종(부록 II 해당)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자동·연속 폐수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함 (제28조)

- 산업단지 등 중앙집중식 폐수처리시설과 부록 II 해당 업종 사업장은 일일 500m<sup>3</sup> 이상 또는 200~500m<sup>3</sup> 미만 배출 구간에 따라, 일반 사업장은 일일 1,000m<sup>3</sup> 이상 또는 500~1,000m<sup>3</sup> 미만 배출 구간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적용 대상이 됨 (부록 XXVIII)
  - 자동 측정 항목으로 유량(유입·유출), pH, 온도, TSS, COD(또는 TOC), 암모니아 등을 규정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함 (부록 XXVIII)
- 불시점검 및 현장 단속 절차 강화 (제32~33조)
- 증거인멸 우려, 위반 정황 확인 또는 환경사고 예방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는 현장점검 및 경찰 합동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시함
  - 점검 시 기업 대표자가 부재하더라도 현장 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함
- 기관 명칭 및 행정체계 정비 (제36조)
- 기존 자원환경부(MONRE)와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농업환경부(MAE)로 정비함
  - 기업은 향후 인허가 신청, 공문 제출 및 모든 대관 업무 수행 시 최신 기관명(MAE) 및 관할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
- 경과규정 및 시행 기준 명확화 (제38~39조)
- 본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전 접수된 인허가 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절차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인허가 또는 투자사업은 구법·신법 적용 여부에 따라 규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함

**<표 1> 주요 규제 내용 및 기업 유의사항**

조항	개정 내용	기업유의사항
제 5 조	<b>프로젝트 분류 및 규모 기준 조정:</b> 토지·수면 사용 면적에 따라 프로젝트를 대규모(300ha 이상), 중규모(50ha 이상 300ha 미만), 소규모(50ha 미만)로 분류하고, 도시구역 및 환경민감지역 내 프로젝트 기준을 강화함	신규 투자, 공장 신설·증설, 부지 이전 시 단순 면적뿐 아니라 사업부지의 행정구역 및 환경민감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EIA 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7 조	<b>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b> 석유·가스 개발, 수력발전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기존 중앙정부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양함	인허가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기관 및 지방별 집행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8조	<b>사업 변경 시 재평가 기준 명확화:</b> 폐수·먼지·배출가스 등 총배출량 증가, 공정기술 변경, 처리공정 변경 시 기존EIA 승인사항의 재검토 또는 환경허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설비 교체, 생산라인 증설, 공정 변경 시 환경인허가 변경 필요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존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제9조	<b>단계별·분할 프로젝트 관리 규정 신설:</b>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추진되거나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단계별EIA 또는 통합EIA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복수 지역 사업은 사업구조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 인허가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제10조	<b>환경허가증 조정·재발급 절차 정비:</b> 생산능력 확대, 기술변경, 폐수처리 방식 변경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허가 조정절차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활용을 명시함	운영 중인 사업장도 생산규모 확대나 설비·공정 변경 시 환경허가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가조건과 실제 운영현황의 일치 여부를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11조	<b>시험운전 규정 보완:</b> 폐기물처리시설의 시험운전 기간을 최대6개월(1회 연장 가능)로 하고, 기간 중 오염물질 측정 및 결과보고 의무를 명확히 함	신규 또는 개조 처리시설은 시험운전 일정, 측정,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정식 운영 전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제18조	<b>수입 폐기물(스크랩) 규제 강화:</b> 수입 폐기물은 자가 생산용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수입량은 설계용량의80% 이내로 제한됨. 2033년12월31일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함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또는 수입 폐기물에 의존하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현지 조달 확대 또는 대체 원료 확보 전략이 필요함

제19~20조	<b>산업단지 환경인프라 요건 강화:</b> 산업단지 내 공동 폐수처리시스템이 없거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 프로젝트 유치 또는 확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동처리 시 유량계 설치 등 요건을 부과함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자사 인허가 외에도 산업단지 자체의 환경인프라 적정성이 사업 확장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점검해야 함
제23조	<b>유해폐기물 연계처리 규정 정비:</b> 허가증에 없는 유해폐기물도 적격 처리업체와 연계처리할 수 있으나, 제3자 재위탁은 금지됨	유해폐기물 위탁처리 시 최종 처리업체의 허가범위와 처리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상 책임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24조	<b>환경허가 의무 배출 임계치 구체화:</b> 생활폐수50m <sup>3</sup> /일 이상, 일반 산업폐수10m <sup>3</sup> /일 이상, 배기가스5,000m <sup>3</sup> /시간 이상 배출 시 환경허가 취득이 필요함. 기준은 프로젝트 전체 기준으로 산정함	제조업체는 실제 폐수·대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허가 대상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비대상 사업도 새 기준상 허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제28조	<b>자동 모니터링 설치 대상 조정:</b> 오염위험 업종(부속서II 해당) 중 일정 규모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동측정기, 카메라 설치 및 실시간 데이터 전송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대상 사업장은 추가적인 계측설비 및 데이터 전송체계 구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 검토가 필요함
제29~31조	<b>에코라벨 및 녹색분류체계 정비:</b>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절차와 녹색금융 활용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마련 근거를 정비함	친환경 제품 인증, 녹색채권, 녹색금융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 발표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32~33조	<b>불시단속 및 경찰 합동점검 강화:</b>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보 없이 즉시 점검이 가능하며,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및 서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사업장은 평시에도 환경관리 서류, 측정기록, 폐기물 처리기록 등을 상시 정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현장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됨
제36조	<b>명칭 및 용어 일괄 변경:</b> '자원환경부(MONRE)'를 '농업환경부(MAE)'로, 일부 지방행정 단위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함	각종 인허가 신청서, 공문, 내부 문서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최신 기관명과 행정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제38~39조	<b>경과규정 및 시행일:</b>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전 접수된 건은 구법 적용이 가능하나 일정 경우 개정 규정 적용이 가능함	진행 중인 인허가 건은 구법·신법 적용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 검토가 중요함

## □ 부록별 주요 규제 세부내용

- 부록 II: 환경오염 위험 업종 및 규모별 분류 (Mức I ~ III)
  - 환경오염 위험도에 따라 업종을 3단계(Mức I, II, III)로 구분하고, 생산용량 기준에 따라 대·중·소 규모를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함
  - 해당 분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자동모니터링 등 주요 환경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주요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ức I (고위험): 광물 가공, 금속 제조, 종이·펄프, 화학제품 제조, 섬유·염색, 가죽 가공, 석유·가스 추출, 화력발전 등
    - Mức II (중위험): 폐기물 처리·재활용, 유해폐기물 처리, 폐기물 활용 제조, 금속 표면처리 및 도금 공정 등
    - Mức III (저위험): 식품가공, 음료 제조, 전자·전기제품 제조, 축산 및 도축 등
  - 동일 업종이라도 생산 규모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금속 제조업은 연간 300,000톤 이상, 화학제품 제조업은 연간 5,000톤 이상을 대규모로 분류함
  - 따라서 기업은 자사 업종 및 생산능력 기준을 토대로 해당 분류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부록 III: Group I 투자사업 (고환경영향 사업군)
  - 환경영향이 큰 투자사업을 Group I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대규모 오염유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 환경민감지역을 이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유해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활용 사업
    -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확장사업
    - 에너지, 광물개발 등 고위험 산업 프로젝트

- Group I 사업은 통상 상위 행정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며, 심사기간 장기화 및 보완 요구 등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은 투자 초기 단계에서 사업 규모, 입지, 업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roup I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록 IV: Group II 투자사업 (중간 환경영향 사업군)
- 중간 수준의 환경영향을 갖는 사업을 Group II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차등적인 환경평가 및 관리의무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부록 II의 중위험 업종
    - 환경민감 요소가 포함된 소규모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또는 수면 이용 사업
    - 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 Group II 사업은 Group I보다 규제 수준은 낮으나, 별도의 환경관리 의무 및 인허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은 단순 업종뿐 아니라 입지 및 사업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Group II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록 XXVIII: 자동·연속 폐수 모니터링 의무 대상
- 자동·연속 폐수 모니터링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시설 유형과 배출량 기준, 측정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산업단지, 생산·영업·서비스 집중구역 및 산업클러스터의 중앙집중식 폐수처리시설
    - 부록 II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부록 II 해당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장 중 아래 일반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산업단지 등 중앙집중식 폐수처리시설: 일일 500m<sup>3</sup> 이상 또는 일일 200m<sup>3</sup> 이상 500m<sup>3</sup> 미만 폐수 배출
- 부록 II 해당 업종 사업장: 일일 500m<sup>3</sup> 이상 또는 일일 200m<sup>3</sup> 이상 500m<sup>3</sup> 미만 폐수 배출
- 일반 사업장: 일일 1,000m<sup>3</sup> 이상 또는 일일 500m<sup>3</sup> 이상 1,000m<sup>3</sup> 미만 폐수 배출
- 측정 항목으로는 유량, pH, 온도, TSS, COD(또는 TOC), 암모니아 등이 포함됨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자동측정 설비 구축, 데이터 전송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용 여부 및 배출량 구간 해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록 XXXIII: 베트남 에코라벨(친환경 인증) 보고서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베트남 에코라벨을 자발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서식을 규정함. 단, 상기한 기업(사업장) 대상 규제와는 관련되지 않음
- 베트남 에코라벨 신청 서식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일반현황 및 생산·영업 현황
  -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생산공정 및 원재료·연료·에너지 사용 현황
  - 폐기물 발생·분리·회수·재사용·처리 현황 등 환경보호 조치
  -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 해당 부록은 제품·서비스가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보고자료 서식을 정한 것으로, 직접적인 의무규제라기보다 친환경 인증 신청·심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행정 서식에 해당함

※ 참고: 기업은 부록 XXXIII 보고서 작성에 앞서 MAE의 인증 절차 페이지에서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자사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라벨 기준이 별도로 공표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 부록별 주요 규제 내용 및 기업 유의사항**

조항	변경 후	기업유의사항
부록II	<b>환경오염 우려 업종 목록 및 규모별 분류 신설·정비:</b> 오염위험 업종을 수준I~III 및 대·중·소 규모로 구분하고, 금속, 제지, 화학, 섬유·염색, 배터리, 전자, 식품가공, 도축·축산, 정유, 폐기물 처리 등 주요 업종의 기준을 구체화함.	자사 업종이 부록II상 오염위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자동모니터링 등 후속 규제 적용의 출발점이 되므로 우선 확인이 필요함.
부록III	<b>Group I 투자사업 목록 정비:</b> 대규모 오염위험 업종, 민감지역 사용 사업, 폐기물 수입 사용 사업, 유해폐기물 처리사업, 대규모 확장사업 등을 환경영향이 큰 사업군으로 분류함.	신규 투자, 공장 신설, 대규모 증설 추진 시 Group I 해당 여부에 따라 보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함.
부록IV	<b>Group II 투자사업 목록 정비:</b> 중규모 오염위험 업종, 소규모라도 환경민감 요소가 있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수면 사용사업, 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을 포함함.	Group I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Group II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환경평가 및 관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입지 조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부록XXV~XVII	<b>환경모니터링 서비스 기관 인증·변경 신청 서식 정비:</b>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기관의 신규 인증, 역량 입증, 인증 범위 변경과 관련한 표준 신청서 및 역량서식을 제시함.	일반 제조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환경측정 서비스 기관에 대한 영향이 크나, 외부 측정기관을 활용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의 인증 적격성 및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부록XXVIII	<b>자동·연속 폐수 모니터링 의무 대상 구체화:</b> 산업단지 중앙폐수처리시설, 부록II 해당 오염위험 업종 사업장, 일정 배출량 이상의 일반 사업장에 대해 자동측정기 설치 및 데이터 전송 의무 기준을 명시함.	폐수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자동관측 설비, 데이터 전송체계, 운영인력 및 유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야 함.
부록XXXIII	<b>베트남 에코라벨 적합성 보고서 서식 정비:</b> 제품·서비스의 친환경성, 법규 준수, 자원·에너지 사용, 폐기물 관리, 자체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인증 신청 보고서 양식을 제시함.	친환경 제품 인증, ESG 마케팅, 녹색금융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은 향후 인증 신청 시 요구자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데이터와 환경성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환경 인허가 및 관련 절차

- 본 시행령에 따른 환경 관련 인허가는 사업의 규모(대·중·소), 업종의 오염위험도, 입지(환경민감지역 여부)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우선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EIA) 대상인지, 환경허가(EL) 취득 대상인지, 운영 단계에서 추가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단계별 관련 세부 절차)
  - (1단계: 사업 분류 및 대상 확정) 토지·수면 이용 면적, 업종별 오염위험도, 입지특성을 종합하여 Group I~IV로 분류하고 EIA 수행 여부를 결정함
    - 근거: 제5조, 부록 II, 부록 III, 부록 IV
  - (2단계: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 심사·승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사업은 성(省)급 기관이 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함
    - 근거: 제7조, 제9조
  - (3단계: 환경허가 취득)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시설 가동 전에 환경허가를 취득해야하며, 신청 시 배출시설의 기술 사양, 오염방지 및 저감설비, 환경관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근거: 제10조, 제24조
  - (4단계: 폐기물 처리시설 시험운전) 폐기물 처리시설은 정식 가동 전 설비 성능 점검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근거: 제11조

- (5단계: 정식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오염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자동·연속 모니터링 설비 설치 및 데이터 전송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근거: 제28조, 부록 XXVIII

## □ 표시사항

- 본 시행령은 기업의 환경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표시 의무는 없음. 다만 부록을 통해 베트남 에코라벨을 자발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신청 서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허가 비용)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신청, 심사 과정에서 행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자동측정 설비 도입 시 초기 투자비 및 운영·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서류 보존 및 제출의무)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배출기록, 폐기물 처리기록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감독기관의 점검 시 제출 의무가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생산능력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공정 기술 변경으로 배출량이 늘어나는 경우, 환경허가 변경 또는 재발급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야 함 (근거: 제18조)
- (폐기물 수입 제한) 수입량은 설계용량의 80% 이내로 제한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2033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됨 (근거: 제18조)
- (부처 명칭 확인) 기존 자원환경부(MONRE)가 농업농촌환경부(MAE)로 통합 개편되었으므로 모든 대관 업무 시 수신처 명칭을 확인해야 함(근거: 제36조)
- (위반 시 제재) 환경허가 미취득, 배출기준 초과, 자동모니터링

미이행, 데이터 조작 등의 경우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 중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근거: 제32조~제34조 관련 감독 규정)

※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기관의 경우 별도의 자격 인증 및 유지 필요

- (인증 유효기간)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기관의 자격 인증은 일반적으로 60개월(5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 또는 재인증 절차가 필요함(근거: 제33조)

#### □ 적합성평가 기관

- 적합성평가는 농업농촌환경부(MAE)에서 인증한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기관을 통해 수행해야 함
  - 기관 역량 확인: 해당 기관이 신청 분야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인증 범위를 사전 확인해야 함(근거: 부록 XXV~XXVII)

##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 한국

#### ○ (현행 규정)

- 한국은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매체별 개별 법률에 따라 기업의 환경 인허가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가 필요한 일부 업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음
- 사업장은 업종별 위험도보다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과 1일 폐수배출량 등 정량 기준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관리되며, 이에 따라 관리의무가 차등 적용됨

####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 (배출시설 정량적 등급 관리) 한국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1~5종 등급제를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고 있음. 대기 분야는 먼지·황산화물(SO<sub>x</sub>)·질소산화물(NO<sub>x</sub>)의 연간 발생 합계량을 기준으로 1종(80톤 이상)부터 5종(2톤 미만)까지 구분하며, 종별로 기술인력 선임, 자가측정 등 관리기준이 차등 적용됨. 수질 분야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1종(2,000㎥ 이상)부터 5종(50㎥ 미만 또는 그 외 사업장)까지 구분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이 상향 적용됨
- (사업 면적별 환경영향평가 적용) 한국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25만㎥ 이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5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됨

## ○ (현행 규정)

- 중국은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강화를 병행하고 있음
- 아울러 오염배출허가제(排污许可)를 운영하여 허가 대상 시설에 대한 배출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환경허가 체계와 유사함

## ○ (도입동향)

- (중국 생태환경법전 시행(2026. 8. 15.)) 환경보호법 등 10개 관련 법률을 통합한 중국 최초의 환경 분야 법전으로, 규제 체계화 및 법적 위상 강화가 핵심임.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수위가 상향되었으며, 조업정지·폐쇄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명시하고 있음
- (자동 감시 체계) 주요 오염원 및 허가 대상 시설에 자동 모니터링 설비 설치와 실시간 데이터 전송 의무를 부과하여 감독을 강화함
- 베트남 시행령 제48호의 자동 모니터링 의무 확대(부록 XXVIII)와 규제 방향성이 일치함

##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 (배출시설의 정량·영향 기반 관리) 업종별 환경위험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베트남(Mức I~III)과 달리, 중국은 고정오염원을 오염물질 발생량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간소화·등록관리로 분류함. 대기·수질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수치가 관리 등급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정량 지표로 활용됨
- (폐수배출 특성 반영 관리) 전국 공통의 단일 폐수량 등급제를 운영하는 대신, 실제 배출 여부, 배출구 설치 현황, 업종별 생산 규모 및 수질오염부하(Pollution Load)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는 일일 배출량 임계치( $m^3/일$ )를 기준으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베트남의 방식보다 실제 환경 부하를 더 정밀하게 반영하는 구조임
- (사업 특성·규모 기반 환경영향평가(EIA):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시 사업 면적이라는 단일 기준보다는 사업 유형, 규모, 환경 민감구역(보호구역 등) 해당 여부를 복합적으로 적용함. 베트남의 그룹(Group) I~IV 분류 체계와 유사하나, 입지 민감도에 따른 평가 수준 차등화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

### 3 EU

#### ○ (현행 규정)

- (통합환경관리 및 BAT 중심 체계) EU는 산업배출지침(IED)에 따라 대규모 산업시설의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통합 관리함. 규제의 핵심은 최적가용기법(BAT) 준수이며, 이를 기반으로 매체 통합 허가를 발급하여 기술 수준에 따른 배출허용치(ELV)를 설정함
- (수계 중심 폐수 관리 체계) EU는 물관리 기본지침(WFD) 및 도시 폐수처리지침(UWWTD)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용량뿐 아니라 수역 별 보호 목표와 하수처리 인프라를 중심으로 폐수 배출을 관리함
- (사업 유형 중심 환경영향평가 체계) EU의 환경영향평가(EIA)는 EIA 지침에 따라 Annex I 사업은 원칙적으로 의무평가, Annex II 사업은 회원국별 선별평가 방식으로 적용됨

#### ○ (도입동향)

- (IED 2.0 시행 및 적용범위 확대) EU는 2024년 개정된 산업배출 지침(IED 2.0, Directive (EU) 2024/1785)을 통해 기존 통합오염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회원국은 이를 2026년 7월 1일까지 국내 법에 반영해야 함. 개정 지침은 배터리 제조, 금속 광업, 일부 대규모 축산시설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관리체계 및 전환계획 관련 요구를 강화함
- 또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철강, 알루미늄 등 대상 품목에 대해 배출량 보고와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 (고정오염원 관리) EU는 베트남과 같이 고정오염원에 대한 사전

허가체계를 운영하지만, 베트남이 업종 위험도와 사업규모를 결합해 관리대상을 구분하는 데 비해, EU는 대규모 산업시설 중심의 통합허가와 BAT 기준 적용을 핵심으로 함

- (폐수 배출 관리) 베트남이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처리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모니터링·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EU는 수질목표, 도시폐수 수집·처리체계, 방류 기준 중심으로 폐수 관리를 운영하고, 산업시설 폐수는 통합허가 조건 안에서 함께 규율함
- (환경영향평가 Annex 분류 방식 적용) 베트남이 업종, 규모, 면적, 처리시설 용량 등을 결합해 리스크 기반으로 분류하는 반면, EU는 Annex I 의무평가와 Annex II 선별평가 구조를 통해 사업 유형 중심으로 평가를 적용함

##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베트남	한국	중국	EU
상위 법·프레임	「환경보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시행령 제08/2022/NĐ-CP 및 제05/2025/NĐ-CP 를 제48/2026/NĐ-CP로 개정·보완함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매체별 개별법중심, 일부 업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2026.8.15. 시행), 「환경보호법」 계열 및 오염배출허가제(排污许可)중심	산업배출지침(IED 2.0), 물관리 기본지침(WFD), 도시폐수처리지침(UWWTD), EIA 지침중심
주요 규제부처	농업환경부(MAE) 중심. 기존 자원환경부(MONRE)와 농업농촌개발부(MARD) 기능 통합, 일부 환경영향평가·환경허가 권한은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양	환경부(MOE)	생태환경부(MEE)	유럽집행위원회(EC) 및 회원국 권한기관
환경인허가 및 배출관리	사업 규모·입지·환경민감성·업종 위험도에 따라 Group I~IV 및 부록 II(Mức I~III)로 분류하여 EIA·환경허가·운영의무를 차등 적용. 일정 규모 이상 폐수·배출가스 배출시설은 환경허가 및 사후관리 대상	업종 위험도보다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1일 폐수배출량기준으로 1~5종 구분·관리, 일부 업종은 통합허가 적용	고정오염원을 중점관리·간소화관리·등록관리로 구분하여 배출허가 관리, 베트남 환경허가 체계와 비교 가능성 높음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 BAT 기반 통합허가를 부여하고 ELV(배출허용치)설정
제품 카테고리(환경·유해물질)	제품 자체 규제보다 사업장·업종·공정 중심 규제가 강하며, 오염위험 업종 분류가 핵심, 에코라벨은 자발적 인증 성격	K-REACH, EPR, 자원순환 규제 중심. 플라스틱 완구류 등 대상 품목 확대	제품 자체 규제보다 시설·업종별 기술기준 및 배출허가 기준적용이 중심	배터리, 철강, 섬유 등 고영향 제품군별 지속가능성·환경정보 요건강화
폐기물·재생원료	수입 폐기물은 자가 생산용 원료로만 사용 가능하고, 수입량은 설계용량의 80% 이내로 제한. 플라스틱	2026년부터 무색PET 재생원료10% 사용 의무, 플라스틱 완구류EPR 편입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일부 재생원료는 국가기준 충족 시 별도 관리	배터리 규정 등으로 재활용·재생원료 함량요구가 단계적으로 강화

	스크랩은 2033.12.31.부터 수입 금지, 유해폐기물은 적격 처리업체 연계처리만 허용 및 제3자 재위탁은 금지			
자동 모니터링 및 사후감시	산업단지 중앙집중식 폐수처리시설, 부록 II 해당 업종 및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자동·연속 폐수 모니터링과 데이터 전송 의무 부과. 시험운전 중 측정·보고, 불시점검 및 경찰 합동점검 등 사후감시 강화	종별 기술인력 선임, 자가측정, 운영기록 보존 등 관리의무 차등 적용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은 자동모니터링 설비 설치 및 행정시스템 연계 의무가 강함	사업장 자동폐수감시보다 허가 이행, 환경관리체계, 제품·공급망 정보 추적관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베트남 시행령 제48호와의 유사성	(기준 규제)	부분 유사: 폐기물·재생원료·일부 배출시설 구분은 비교 가능하나, 인허가 기본구조는 상이	높은 유사성: 환경허가, 고정오염원 관리, 자동모니터링 측면에서 가장 비교 용이	중간 유사성: 통합허가와EIA는 비교 가능하나, BAT 중심·회원국 분권 집행 구조 차이 존재
실무 리스크 및 사례	환경허가 조정·재발급 대응, 자동모니터링 설비 투자 및 운영비 증가, 산업단지 환경인프라 미비 시 증설 제한, 수입 폐기물 제한에 따른 원료조달 부담	재생원료 조달, EPR 확대, 대기·수질 종별 관리 대응 부담	허가 갱신, 자동감시설비 설치·운영, 위반 시 행정제재 리스크	BAT 대응 투자, 환경관리체계 구축, 탄소·제품정보·추적성 문서 준비 부담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 규제 개요

- 동 규제는 환경영향평가(EIA), 환경허가, 산업단지 폐수처리, 자동·연속 모니터링, 수입 폐기물 관리, 불시점검 등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 의무와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령임
- 규제의 직접 대상은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든 업종 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프로젝트이며, 폐기물 수입 활동 또한 규제 대상이 됨

### ○ 주요 요구사항

- 사업 유형·규모·입지특성에 따라 EIA 및 환경허가 대상 여부를 재판정하고, 필요 시 허가 조정·재발급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배출가스 배출 사업장은 환경허가 취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록 II 해당 업종 및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은 자동·연속 폐수 모니터링 설비와 데이터 전송체계를 갖추어야 함
- 수입 폐기물은 자가 생산용 원료로만 사용 가능하고, 수입량은 설계용량의 80% 이내로 제한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2033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됨
- 사업 변경 시 배출량 증가, 공정기술 변경 등이 발생하면 기존 EIA 승인사항 재검토 또는 환경허가 조정이 요구될 수 있음

###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 (인허가 및 설비투자 부담 증가) 베트남 현지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 변경으로 배출량 증가, 환경영향 증대 또는 공정기술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승인사항의 재검토 또는 환경허가 조정·재발급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제28조 및 부록

XXVIII에 따라 부록 II 해당 업종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자동·연속 폐수 모니터링 설비 설치와 데이터 전송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의 인허가 대응 부담과 설비투자 부담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원료조달 리스크)**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입 폐기물은 자가 생산용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수입량도 해당 시설 설계용량의 80% 이내로 제한되며, 2033년 12월 31일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수입 재생원료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원료 수급 차질, 조달비용 상승 및 대체 원료 확보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운영 리스크)**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불시점검, 현장 단속, 시험운전 중 측정·보고 의무 강화로 인해 운영상 미준수 리스크와 행정제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관할 부처 변경에 따른 대응 필요)**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담당 행정 체계가 농업환경부(MAE) 중심으로 정비됨에 따라, 기업은 인허가 및 대관 업무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결론 및 권고 사항

- 동 규제는 제품 규격 규제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환경인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입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실질적 영향이 큼
- 베트남 소재 기업은 우선 자사 사업장이 부록 II 해당 업종인지, EIA 및 환경허가 대상인지, 자동 모니터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베트남 소재 기업으로써 수입 폐기물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현지 원료 조달망 확보, 대체 원료 검토, 설비투자 계획 반영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베트남에 폐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베트남의 폐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 없음

※ 자국 내 사업장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정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가 불가능한 영역이며,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수입을 포함하는 자국 내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수입 비율 제한이 외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보기 어려움.

## □ 대응 방안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 중견 · 대기업	인허가 대상 여부 선별 및 기본 대응체계 구축	부록 II 업종 해당 여부, 제24조상 폐수·배출가스 배출기준 충족 여부, 자동 모니터링 대상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환경허가·EIA 필요 시 현지 대리인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서류와 대응 절차를 정비함. 수입 폐기물 사용 여부와 설계용량 80% 제한 준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함
	설비투자 예산 확보 및 공급망 리스크 선제 관리	환경허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생산능력 확대·공정 변경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동·연속 모니터링 설비 도입 비용을 예산에 반영함. 폐기물 수입 제한과 2033년 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베트남 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대체 원재료 테스트 착수
	전사적 환경 거버넌스 및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고도화	베트남 내 전 사업장에 대해 실시간 환경 데이터 관리, 허가 갱신·조정, 불시점검 대응 SOP를 표준화하고, MAE 및 성급 인민위원회 관할 체계에 맞춘 대관 전략을 재정비함.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비한 공급망 재편, 재생원료 전환, 현지 투자전략 조정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함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 1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연번	인용법령(국문)	인용법령(원어)
1	「환경보호법」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No. 72/2020/QH14
2	환경보호법의 세부 이행을 규정한 기존의 핵심 시행령	Decree No. 08/2022/NĐ-CP
3	08/2022 시행령을 한 차례 개정한 시행령	Decree No. 05/2025/NĐ-CP
4	농업·환경 분야 15개 법률 개정 상위법	Law No. 146/2025/QH15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48/2026/ND-CP

하노이, 2026년 1월 29일

### 시행령 (NGHỊ ĐỊNH)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2022년 1월 10일자 시행령 제08/2022/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2025년 1월 6일자 시행령 제05/2025/ND-CP에 의해 개정·보완된 바 있음)

정부조직법 제63/2025/QH15호에 근거함;

지방정부조직법 제72/2025/QH15호에 근거함;

법률 제11/2022/QH15호, 제16/2023/QH15호, 제18/2023/QH15호, 제47/2024/QH15호, 제54/2024/QH15호 및 제146/2025/QH15호에 의해 일부 조항이 개정 및 보완된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에 근거함;

법률 제90/2025/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공공투자법 제58/2024/QH15호에 근거함;

법률 제03/2022/QH15호, 제57/2024/QH15호 및 제143/2025/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투자법 제61/2020/QH14호에 근거함;

국가예산법 제89/2025/QH15호에 근거함;

농업환경부 장관의 제의에 따라;

정부는 2025년 1월 6일자 시행령 제05/2025/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환경보호법」의 세부 규정에 관한 2022년 1월 10일자 정부 시행령 제08/2022/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을 발령한다.

### 제1조. 제1조의 개정·보완

#### “제1조. 적용 범위

본 시행령은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환경보호법」의 다음 조항들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제9조 제4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4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4항;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8조 제7항; 제31조 제2항; 제33조 제7항;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7항; 제39조 제1항 가목; 제41조 제4항; 제44조 제6항; 제46조 제5항; 제49조 제8항; 제51조 제6항; 제52조 제1항 및 제4항; 제53조 제4항; 제54조 제5항; 제55조 제5항; 제56조 제7항; 제59조 제3항; 제61조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7항; 제67조 제7항; 제69조 제2항 라목;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8항; 제73조 제7항; 제78조 제4항;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제80조 제3항; 제84조 제3항; 제86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항; 제111조 제7항; 제112조 제7항; 제114조 제4항; 제115조 제3항; 제116조 제2항 가목; 제121조 제7항; 제131조 제4항; 제132조 제4항; 제135조 제4항; 제137조 제5항; 제138조 제5항; 제140조 제2항; 제141조 제5항; 제142조 제4항; 제143조 제3항; 제144조 제5항; 제145조 제4항; 제146조 제2항; 제148조 제7항; 제149조 제5항; 제150조 제5항; 제151조 제3항; 제158조 제4항; 제160조 제6항; 제167조 제4항; 제171조 제6항.”

## **제2조. 제18조 제1항의 개정·보완**

“1. 성급 인민위원회(지방정부)는 환경보호법 제19조 제3항 b목의 규정에 따라 토양 환경이 특별히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의 처리·개선 및 복원 계획을 수립·공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의 시행 내용은 매년 성(省)급 연례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종합을 위해 농업환경부에 송부해야 한다.”

## **제3조. 제19조 제5항 나목의 개정·보완**

“나) 이 시행령 제21조 제4항 b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급 자연유산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위는 관할 지역 내 국가급 자연유산 지정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기관을 지정하고 자연유산 인정 여부를 검토·결정한다.

농업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위는 2개 이상의 중앙직할 성·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행정 관리 책임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한 국가급 자연유산 지정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농업환경부에 제출한다.

농업환경부 장관은 심사 기관을 지정하고 자연유산 인정 여부를 검토·결정한다.”

## **제4조. 제20조의 일부 항 및 조항 개정·보완**

1. 제2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자연유산이 1개 성 또는 중앙직할시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경우:

서류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농업환경부로 보내 심사를 진행한다.

자연유산이 중앙 부처·기관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행정관리 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한 경우, 자연유산 관리위원회 또는 자연유산 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농업환경부에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자연유산 후보 지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동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

2. 제2항 d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d) 농업환경부는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서류를 보완하고, 농업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국제기구의 국제적 지위(명칭) 인정 후보 추천 방침을 승인받는다.”

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농업환경부는 해당 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거나 필요 시 외교부와 협력하여 국제기구에 추천 서류를 제출한다.”

## **제5조. 제25조의 일부 항 및 호 개정·보완**

1. 제1항 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b) 사업에서 사용하는 토지 및 수면을 포함한 토지의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한다.

대규모는 300ha 이상,

중규모는 50ha 이상 300ha 미만,

소규모는 50ha 미만으로 한다.”

2. 제4항의 일부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본 시행령 부록 II에 규정된 환경오염 발생 위험이 있는 생산·사업·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수행 위치가 도시 분류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의 구 phường 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또는 산업클러스터의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에 폐수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환경으로 배출되는 먼지 또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b) 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c) 다음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 생물다양성, 임업 또는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보호구역
- 특별용도림, 보호림, 자연림이 있는 토지
- 수산자원 보호구역
- 중요 습지
-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 자연유산

에 해당하며, 동시에 본 시행령 부록 III의 번호 7a (3)열의 a, b, c, d 항목 또는

본 시행령 부록 IV의 번호 5a (3)열의 a, b, c, d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다음 목적만을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

- 산림 관리 및 보호
-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전
- 산불 예방 및 진화
- 산림 조성 및 관리.”

c) d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d) 다음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의 사용 목적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 자연보호구역
- 세계 자연유산
- 생물권보전지역
- 중요 습지
- 특별용도림
- 보호림
- 자연림이 있는 토지

에 해당하며, 동시에 본 시행령 부록 III의 번호 7b (3)열의 a, b, c, d 항목 또는 본 시행령 부록 IV의 번호 5b (3)열의 a, b, c, d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다음 목적만을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

- 산림 관리 및 보호
-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전
- 산불 예방 및 진화
- 산림 조성 및 관리.”

#### **제6조. 제26조 제4항에 k호 뒤에 l호를 추가**

제26조 제4항의 k호 뒤에 l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l) 공공투자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별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주는 이 조 제3항 a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자정보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만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제7조. 제26a조 제1항의 개정·보완**

제26a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환경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농업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권한에 속하는 투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및 환경허가 발급(환경허가 대상인 경우)을 위임한다.

a) 국회 또는 국무총리의 투자정책 결정 또는 승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공공투자사업.

다만, 고품폐기물 재활용·처리 서비스 사업은 제외한다.

b) 다음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의 사용 목적 변경 요구 여부만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사업으로서 국회 또는 국무총리의 투자정책 결정 또는 승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업:

자연보호구역

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중요 습지

특별용도림

보호림

자연림이 있는 토지

c) 국회 또는 국무총리의 투자정책 결정 또는 승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수력발전 사업

d)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사업.”

#### **제8조. 제27조의 일부 호 및 항의 개정·보완**

1. 제5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사업이 정식 운영 단계에 들어갈 때 환경으로 배출되는 총 폐수량 또는 총 먼지·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

사업의 기존 총 폐수 배출량 또는 총 먼지·배출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 또는 환경허가서에 규정된 최대 배출량 및 배출 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제6항의 일부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b) 광물 매장량 또는 채굴능력을 증가시키거나 광물 채굴 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광물 관련 법령에 따라 광물 채굴허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광물 채굴구역을 추가하여 지질 및 광물 관련 법령에 따라 광물 채굴허가 발급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환경개선 및 복원 내용이 변경되어 환경개선·복원 보증금이 감소하는 경우.

다만, 광물 채굴 면적 또는 매장량 감소로 인해 보증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 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c) 수자원법의 규정에 따라 수자원 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정도로 수자원의 채굴 및 이용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지표수 채굴의 경우 수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c) e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e)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이미 승인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 공정 중 최소 하나의 공정을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승인된 폐기물 처리 기술을 다른 기술로 변경하는 경우.

처리용량이 1일 50m<sup>3</sup> 이상인 폐수처리 시스템

(다만, 투자사업의 폐수가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산업클러스터 또는 도시·주거지역의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에 연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리용량이 시간당 20,000m<sup>3</sup> 이상인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3. 제11항 다음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가 수정·보완 조건으로 통보된 경우, 사업주가 보고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심사는 환경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수행한다.”

### **제9조 제27조 뒤에 제27a조 및 제27b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제27조 뒤에 제27a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7a조 .투자 단계가 구분되거나 구성 사업으로 분할된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A) 작성

1. 권한 있는 기관이 투자사업을 구성사업으로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환경 기준에 해당하는 각 구성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2. 투자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환경 기준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투자 단계가 구분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각 투자 단계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사업주가 투자 단계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을 선택한 경우, 후속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승계하고 이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후속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은 이전 단계의 유효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을 대체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투자사업 분류를 위한 환경 기준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제27a조 뒤에 제27b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7b조 일부 특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및 환경허가증 발급

1. 다음의 투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권한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사업이 2개 이상의 성급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 성급 인민위원회의 행정관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하며,
- 환경보호법 제35조 제3항 및 이 시행령 제26a조 제1항에 규정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권한에 속하는 경우

a)

투자사업이 2개 이상의 성급 행정구역에 걸쳐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회 또는 총리가 투자 방침을 결정·승인하고,
- 민관협력투자법(PPP) 규정에 따라 1개 성급 인민위원회를 권한 있는 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 공공투자법 규정에 따라 1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투자 결정을 위임한 경우
- 또는 사업이 구성사업으로 분할되어 해당 구성사업이 하나의 성급 행정구역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권한은 다음에게 있다.

- 권한을 위임받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 구성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b)

투자사업이 2개 이상의 성급 행정구역에 걸쳐 있고 이 항 a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 중 하나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를 실시한다.

c)

투자사업이 성급 인민위원회의 행정관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한 경우, 투자사업의 폐기물을 육상으로 반입하는 지점이 위치한 지역 중 하나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를 실시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결과를 승인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환경허가증 대상인 경우 환경허가증 발급 권한을 가진다.

3.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및 환경허가증 발급을 수행하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내 환경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 및 발급 과정에서 사업 시행 지역이 포함된 다른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사업 또는 시설의 환경 관련 서류 분할·합병·통합에 따른 환경허가증 발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투자사업 또는 시설의 활동 장소가 동일하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환경허가증으로 통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승인한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
- 또는 기타 환경 관련 서류와 동등한 문서

는 해당 통합된 투자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환경허가증 발급의 근거가 된다.

이 경우 환경허가증 발급 권한은 이 시행령 제26a조에 따른 환경허가증 발급 권한 위임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된 투자사업 또는 시설이 이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투자사업과 동등한 환경 기준을 가진 경우 환경보호법 제41조에 따른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에게 있다.

b)

투자사업 또는 시설의 활동 장소가 인접하고 사업주가 동일하며 폐수 또는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환경허가증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환경허가증 발급 권한은 a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c)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을 받은 투자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분할하려는 경우, 환경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d)

환경허가증 또는 부분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은 투자사업 또는 시설이 규정에 따라 여러 사업 또는 시설로 분할되는 경우, 사업주는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이미 발급된 환경허가증 또는 부분 환경허가증의 내용을 승계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분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후의 사업주는

- 환경허가증 발급
- 환경허가증 변경
- 환경허가증 재발급

절차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허가증 보유 기한을 준수하거나 환경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30조의 조 제목 및 일부 항·호의 개정·보완**

1 제30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환경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및 취소

2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투자사업의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는 허가증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허가증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a 환경보호법 제44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환경허가 내용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양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허가 내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환경허가증 변경을 실시한다.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양 또는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는 해당 변경 사항을 투자사업 또는 시설의 정기 환경보호 업무 보고서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b 투자 사업, 시설, 집중 생산·경영·서비스 구역, 산업단지 등의 생산 규모나 용량이 증가하거나, 생산 기술이 변경되는 경우. (본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허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c 이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수 이전 및 폐수 처리 수용 방안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폐수 재이용 방안을 추가하는 경우.

d 이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와 같은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이 조 제5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허가증 변경은 규정에 따라 발급 기관 또는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행된다.

환경허가증 변경 대상인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는 변경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허가증 변경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만 변경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3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환경허가증 변경 발급 신청 서류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직접 제출

우편 제출

3 제13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환경허가증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 경우, 위반 결과 시정 기간 동안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환경허가증 발급 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4 환경보호법 제44조 제5항에 규정된 환경허가증 취소 사유가 발견되었으나 이 조 제1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경허가증의 취소 및 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환경허가증이 취소 대상임을 발견한 국가기관은 환경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 서면을 보내 해당 허가가 권한 없이 발급되었거나 허가 내용이 환경보호법 규정에 위반됨을 통보한다.

b 취소 대상 환경허가증을 발급한 국가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는 이 항 a호의 규정에 따른 통보 문서를 받은 후 환경허가증 발급 심사 절차 및 내용을 재검토할 책임이 있다.

환경허가증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 경우, 환경허가증을 발급한 국가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는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가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발급 기관에 환경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새로운 환경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환경허가증을 발급했던 기관은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가 법령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기존 환경허가증을 취소한다.

환경허가증의 내용이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환경허가증을 발급했던 기관은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투자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새로운 환경허가증을 발급한다.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기존 환경허가증의 취소는 새로운 환경허가증 발급과 동시에 수행된다.

5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6 농업환경부 장관은 환경허가증 변경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경허가증의 변경 발급, 재발급 및 취소 절차와 관련된 서식을 제정한다.

## 제11조 제31조의 일부 항 및 호의 개정·보완

1 제1항 i호 뒤에 k호 및 l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k 처리 후의 폐수가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산업단지, 도시 구역 또는 집중 주거지역의 집수 및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에 연결되는 투자사업 또는 시설의 폐수처리시설

1 처리 용량이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먼지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2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6 폐기물 관측 및 시험운전 결과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험운전 기간은 투자사업의 사업주가 결정하되 농업환경부 장관이 규정한 폐기물 관측 시간 및 빈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험운전 종료 시점은 시험운전 시작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경허가증에 기재한다.

시험운전 과정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명시한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 규정에 따라 시험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모가 크고 단계별로 투자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시험운전 기간의 연장은 국가기관 또는 환경허가증 발급 권한을 가진 자가 결정한다.

3 제7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시험운전 과정의 점검을 위하여 투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다음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허가증 발급 기관이 농업환경부인 경우 성급 환경보호 전문기관

환경허가증 발급 기관이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사회(읍·면·동)급 행정기관

또한 폐수·먼지·배출가스 자동 관측 대상 투자사업의 경우 자동 연속 관측 결과를 모니터링 및 감독하여야 하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자사업 시행 지역의 성급 환경보호 전문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4 제8항 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c 환경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시험운전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고 발생 지역의 사회급 인민위원회 및 환경허가증 발급 국가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해결 지침을 받아야 한다.

환경허가증 발급 기관이 농업환경부인 경우 환경 문제 해결 협력을 위하여 성급 환경보호 전문기관에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환경사고 복구 및 피해 배상의 책임을 지며 법령 규정에 따라 위반 처분을 받는다.

5 제10항의 일부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10항 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b 공무원을 파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투자사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시험운전 과정을 현장 점검한다.

환경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측정,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시험운전 중 배출된 폐기물이 폐기물에 관한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 조 제8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사업주의 재시험운전 과정에서도 배출 폐기물에 대한 측정, 시료 채취 및 분석을 계속 실시한다.

허가 기관의 폐기물 관측은 이 조 제10a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점검 종료 후 허가 기관은 시험운전 점검 결과를 통보하며 환경허가증의 적합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주가 법령 규정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b 제10항 d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d 폐기물 처리시설 시험운전과 관련된 사업주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6 제10항 뒤에 제10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0a 폐기물 처리시설 시험운전 점검 과정에서 허가 기관 또는 점검단(환경보호법 제44조 제2항 b호 및 제46조 제4항의 경우)은 최소 1회 단일 시료 채취를 실시한다.

투자사업 또는 시설에 처리 대상 오염 특성, 처리 기술 및 처리 설비가 유사한 먼지·배출가스 처리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처리 용량이 가장 큰 시설 1개를 선정하여 관측하고 해당 시설을 기준으로 유사 시설의 처리 효율을 평가한다.

폐기물 시료 채취 및 분석 비용은 환경사업 예산에서 지출한다.

7 제11항 및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1 투자사업의 사업주 또는 시설 운영자는 환경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 및 기타 사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시험운전 결과를 농업환경부 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2 농업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처리시설 시험운전과 관련된 문서 서식을 제정한다.

#### **제12조 제32조의 제목 및 일부 항의 개정·보완**

1 제32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환경등록 대상이 아닌 대상

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환경보호법 제49조 제2항 a호 및 c호에 규정된 투자사업 또는 시설로서 농업·환경 분야 15개 법률 일부개정법 제1조 제14항에 따라 개정·보완된 경우.

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 환경보호법 제49조 제2항 d호에 규정된 대상으로서 농업·환경 분야 15개 법률 일부개정법 제1조 제14항에 따라 개정·보완된 대상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XVI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제13조 제35조 제5항 c호의 개정·보완**

c 사회(읍·면·동)급 인민위원회는 전통 공예 마을에서 발전을 장려하지 않는 업종·직종의 전환 계획 및 시설 또는 가구의 전통 공예 마을 외부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해당 계획은 지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36조의 일부 항의 개정·보완**

1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환경개선·복원 방안의 심사 기간은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심사 기관은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심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설 운영자가 환경개선·복원 방안을 수정·보완하는 기간과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승인 결정 검토 및 발급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6 환경개선·복원 방안의 심사 결과는 심사 결과 승인 결정으로 표시한다.

심사 기관은 요구 사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환경개선·복원 방안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을 발급할 책임이 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된 환경개선·복원 방안 서류(해당되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심사 의견에 대한 설명 문서 1부

b 수정·보완된 환경개선·복원 방안 1부

### **제15조 제37조의 일부 항의 개정·보완**

1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7 예치금의 반환은 조직 또는 개인이 환경개선·복원 내용을 완료한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광물 채굴사업의 광산 폐쇄 권한을 가진 기관은 광산 폐쇄 단계에서 환경개선·복원 방안의 이행 완료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개선·복원 방안의 이행 완료 내용은 지질 및 광물 관련 법령에 따라 광산 폐쇄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광산 폐쇄 결정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8항 뒤에 제8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8a 광산 폐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물 채굴 허가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

조직 또는 개인이 광물 채굴 허가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채굴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광물 채굴 허가의 효력 종료일 또는 허가 취소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치금을 보관한 기관은 해당 조직 또는 개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38조 제3항 d호의 개정·보완**

d 적법하고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근거로 농업환경부는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XX의 서식에 따라 POP 물질 면제 등록 승인 여부를 조직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POP 물질 면제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43조의 일부 호 및 항의 개정 및 보완**

제2항 b)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b) 해체 후 재료 및 설비를 보관하는 구역은 침수되지 않도록 바닥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보관장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하도록 우수 유출수를 수집·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3항 a)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a) 연료, 유류, 선저수(bilge water),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 기타 액체 및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3항 b)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b) 석면 및 PCB 제거: 선박을 절단하기 전에 절단 부위에서 석면과 PCB를 미리 분리·수거·운반하여야 한다. 선박의 각 부분이 육상으로 인양된 후 접근이 용이해지면 남아 있는 석면과 PCB 전부를 계속 수거하여야 한다. 석면 분리 및 수거 구역은 주변 환경으로 석면 섬유가 확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한다. 석면은 분리 전 및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육상에서의 석면 분리 구역은 동일한 공정을 갖춘 별도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d)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d) PCB를 포함한 폐기물(고체 및 액체 형태)의 보관 구역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해 인계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45조의 일부 호 및 항의 개정 및 보완**

제3항 a)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a) 수입 폐기물 보관 창고: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를 규정에 따른 폐수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집·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바닥 높이는 침수되지 않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바닥은 밀폐·방수 구조로 하고 계산된 최대 폐기물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보관 구역 전체에는 불연성 재질로 된 햇빛·비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b)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b) 수입 폐기물 보관장:

보관장을 통과하는 우수 유출수 및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규정에 따른 폐수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집·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바닥은 밀폐·방수 구조로 하고 계산된 최대 폐기물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4항 뒤에 제4a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a. 수입 폐기물은 자사의 투자사업 또는 시설에서 제품 또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폐기물을 단순 전처리 후 재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 폐기물을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투자사업 또는 시설은 설계 용량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다. 2033년 12월 31일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 **제19조. 제48조 제5항 뒤에 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제5항 뒤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및 산업단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폐수 수집 및 이송 배관은 기술 기준에 따라 설계·설치되어 주변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리를 위해 이전되는 폐수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 공동 이용 방안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서, 환경허가증 또는 환경등록 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라)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또는 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투자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폐수 이전

기관과 수용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폐수 수용 기관은 접수된 전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 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폐수 이전 기관은 수용 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추가 폐수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2차 투자사업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수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 및 이행 약속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환경등록 대상인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또는 산업단지가 이 시행령 [부록 II]에 규정된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업종을 추가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환경등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폐수 수용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환경허가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6항 뒤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보호법」 제52조 제1항(「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항 가목에 따라 개정·보완된 규정)에 따른 특수한 경우에는, 2차 투자사업 또는 시설이 방류수역으로 배출하기 전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폐수 수집·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중 폐수 수집·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입주율이 80% 이상인 산업단지.

나) 방류수역으로 배출되는 총 폐수량(2차 투자사업 또는 시설의 폐수를 포함)이 1일 100m<sup>3</sup> 미만인 산업단지 기반시설 투자사업.”

#### **제20조. 제49조의 일부 호 및 항의 개정 및 보완**

제1항 b)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b) 다음의 경우에는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산업폐수가 발생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기존 운영 시설의 확장 투자사업을 추가로 수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규 투자사업이 이 시행령 [부록 II]에 규정된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생산·사업·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면서, 해당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또는 산업단지의 투자 유치 허용 업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나) 해당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또는 산업단지가 이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환경보호 기반시설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규 투자사업 또는 확장 투자사업이 환경으로 추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폐수를 집중 폐수 수집·처리 시스템에 연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

환경보호법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 연결 의무가 면제된 투자사업으로서 추가 발생하는 산업폐수가 본 항 a)에 따라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에 연결되는 경우”

제1항 뒤에 제1a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a. 이 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따라 집중 폐수 수집·처리 시스템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산업단지, 또는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집중 폐수 수집·처리 시스템 설치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a), b) 및 d)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5. 성급 인민위원회는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추가 책임을 가진다. (이하 생략)”

### **제21조. 제63조의 일부 호 및 항의 개정 및 보완**

1. 제1항 d)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d) 권한에 따라 관련 계획, 전략, 프로그램, 계획 및 과제에 포함된 생활폐기물 관리 내용을 지도하고 시행한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 부합하도록 이행 예산을 편성한다.”

2. 제1항 d) 뒤에 e)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 「환경보호법」 제59조 제4항 및 제79조 제5항(「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항 및 제24항에 따라 각각 개정·보완된 규정)에 따라 성(省) 내 공공위생 및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경제·기술 기준을 규정한다.”

3. 제3항 c)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c)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동을 조직·시행하고, 해당 지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공공위생 업무를 수행한다.”

4. 제3항 d)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d) 성급 인민위원회의 분장에 따른 기타 책임을 수행한다.”

5. 제3항 d) 뒤에 d)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d) 해당 지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공공위생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다.”

### **제22조. 제70조 제1항 뒤에 제1a항 신설**

“1a. 위험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투자사업 또는 시설은 환경보호계획 또는 위험폐기물 처리 내용을 포함한 관련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위험폐기물 공동처리(Co-processing)를 수행하는 투자사업 또는 시설.

b) 규정에 따른 기술적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험폐기물 재활용 서비스만 수행하는 투자사업 또는 시설

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폐 태양광 패널 재활용

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금속 재활용 또는 생산(다만 폐 납, 폐 납축전지 재활용 또는 폐슬러지로부터의 금속 재활용·회수는 제외)

폐 촉매 재활용

폐 활성탄 재활용

생산자 및 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EPR) 이행을 위해 해당 생산 시설 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폐기물 재활용”

### 제23조. 제73조의 개정 및 보완

제73조 환경허가증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폐기물의 연계 운반 및 이전에 관한 요건

1. 위험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행 내용이 포함된 환경허가증 또는 부분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은 조직 또는 개인은 자신의 환경허가증 또는 부분 환경허가증에 포함되지 않은 종류의 위험폐기물에 대하여 적합한 기능을 갖춘 다른 위험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자와 운반 및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
2. 이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환경허가증 또는 부분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은 두 조직 또는 개인이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서 또는 연계 계약(이하 "연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연계 계약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측은 해당 위험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연계하여 인수하는 폐기물의 양은 환경허가증 또는 부분 환경허가증에 따라 허가된 처리 시스템 또는 장비의 처리 허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계 계약에 따라 배출원으로부터 위험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한 위험폐기물 중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위험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배출원의 서면 동의
  - 위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연계에 관한 3자 계약
4. 이 조에 따라 위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연계를 수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투자사업 또는 시설의 정기 환경보호 보고서에 연계 운반 및 처리된 위험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74조 제4항 c) 및 제5항의 개정 및 보완

제4항 c)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5.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항 a호에 의해 개정된 「환경보호법」 제39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 폐수의 처리 또는 재이용을 위한 인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서 또는 환경허가증에 명시되어야 한다.
- 인수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과 처리 용량을 갖춘 폐수처리 시스템을 갖추거나, 인수한 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생산 공정 라인을 보유하여야 한다.
- 처리 후 폐수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인수한 미처리 폐수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을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5. 「환경보호법」 제39조 제1항 a)에 규정된 투자사업(「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항 a)에 따라 개정·보완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a) 환경으로 배출되는 생활폐수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총 유량이 1일 50m<sup>3</sup> 이상인 경우
- b)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유형의 투자사업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산업폐수가 발생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가축 사육 및 가축·가금 도축 유형은 본 항 c)의 규정을 적용한다.

c)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사업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산업폐수가 발생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총 유량이 1일 10m<sup>3</sup> 이상인 경우  
(다만 일반 건축자재용 광물 및 석회석 채굴 지역을 통과하는 우수 유출수는 제외한다.)

d) 환경으로 배출되는 생활폐수와 산업폐수가 발생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본 항 a) 및 c)에 규정된 기준 미만이지만 총 유량이 1일 50m<sup>3</sup> 이상인 경우

d) 환경으로 배출되는 먼지 또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총 유량이 시간당 5,000m<sup>3</sup> 이상인 경우

본 항 a), b), c), d) 및 d)에 규정된 폐수 및 배출가스 발생량은 투자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투자 단계별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제9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및 보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함:

“1. 환경관측 서비스 활동 자격 인증서는 본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에 발급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함:

“4. 환경관측 서비스 활동 자격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개월(5년)\*\*이며, 여러 번 재발급 될 수 있다. 매 재발급 시 유효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6조. 제93조 제3항 c호의 개정 및 보완**

“c) 환경관측 서비스 활동 자격 심사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해당 조직에 대한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책임이 있다(단, 조직의 서류 보완 및 수정 기간은 제외함).

인증서 발급을 위한 자격 심사는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결과
- 해당 조직에 대한 실제 현장 조사 및 평가 결과
- 환경관측 자격 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환경관측 서비스 활동 자격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발급 기관은 해당 조직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27조. 제94조 제4항 c호의 개정 및 보완**

“c) 환경관측 서비스 활동 자격 심사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인증서 내용 변경을 신청한 조직에 대하여 심사 및 인증서 내용 조정(변경)을 완료해야 한다(단, 조직의 서류 보완 및 수정 기간은 제외함).

인증서 내용 조정을 위한 자격 심사는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결과
- 해당 조직에 대한 실제 현장 조사 및 평가 결과
- 환경관측 자격 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인증서 내용 조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발급 기관은 해당 조직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28조. 제97조 제1항 a호의 개정 및 보완**

“a)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유형의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산업단지, 프로젝트, 시설의 폐수 배출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균 배출량: 1일(24시간) 200m<sup>3</sup> 이상 500m<sup>3</sup> 미만인 경우

대량 배출량: 1일(24시간) 500m<sup>3</sup> 이상인 경우”

#### **제29조. 제1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및 보완**

1.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함:

“1. 인증 등록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현 자원환경부 역할 포함)는 서류의 완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신청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류 보완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6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베트남 에코라벨(Nhãn sinh thái Việt Nam) 인증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함:

“2.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절차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된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필요한 경우, 시설 현장 조사 및 감정 의뢰 수행

해당 기관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결정서를 발급한다. 평가 결과가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30조. 제148조 제1항 b호의 개정 및 보완**

“b)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결정 내용의 변경 제안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자원환경부)는 해당 제안에 동의할 경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결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한다.”

#### **제31조. 제154조 제2항의 개정 및 보완**

“2.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관련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협력하여, \*\*녹색 신용(Green Credit)\*\*을 부여받거나 \*\*녹색 채권(Green Bond)\*\*을 발행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기준 및 확인 절차(이하 \*\*녹색 분류 체계(Danh mục phân loại xanh)\*\*라 함)를 구축하고 공표하는 것을 주관한다.”

#### **제32조. 제162조의 개정 및 보완**

제162조 환경보호에 관한 감사 활동

1. 환경보호에 관한 감사 활동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표하지 않는 환경보호 분야의 특별 규정에 따른 수시 감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른다.

2. 환경보호 불시 감찰은 감찰법 규정에 따라 수행하되, 환경보호법 제160조 제2항(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4항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에 의거하여 검찰단 구성 결정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a) 위반 행위와 관련된 서류 및 증거를 은닉·파기하여 검찰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검찰 결정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단 구성 결정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
- b) 검찰단장은 검찰 결정문을 제시한 직후, 폐기물 발생 구역, 오폐수·배출가스 수집 및 처리 시설, 배출구 등 검찰 결정 범위 내의 모든 구역에 즉시 접근하여 검찰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 c) 검찰 대상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검찰단장은公安(Police) 또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규정된 기술 장비 및 수단을 동원해 현장에 진입하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 d) 법적 대표자는 경위서 및 시료 채취 확인서에 서명할 책임이 있다. 대표자 부재 시 현장 관계자가 서명하며,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지역 인민위원회나公安 관계자가 입회인(증인) 자격으로 서명한다.
- e) 증거 인멸 방지 조치를 완료한 후, 최대 3일 이내에 검찰단장은 검찰 결정 내용을 공식 선포해야 한다. 단, 법적 대표자가 요청된 시간에 부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선포 절차는 검찰법을 따른다.
- f) 조직 및 개인은 검찰 결정문이 제시된 후 검찰단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방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g) 검찰단원 및 관련 공무원은 불시 검찰 결정 과정, 계획 수립 및 승인, 선포 준비 단계 등 관련 정보를 검찰 대상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33조. 제163조의 개정 및 보완

제163조 환경보호 분야 전문분야 검사 활동

1. 환경보호 분야 전문분야 검사 활동은 감사 및 검사에 관한 법령 규정과 본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환경보호 분야의 특별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전문분야 검사에 대한 책임 및 검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환경보호법」 제160조 제1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은 조직,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환경보호 법령 준수 여부 검사를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b) 전문분야 검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른 검사
- 국가관리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검사
-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요구에 따른 검사
- 수시 검사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단 구성 결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전 통보 시 검사 대상자가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또는 증거를 은닉하거나 이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검사단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검사 결정을 내린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환경범죄 예방·단속 경찰은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수시 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검사 계획 수립

환경보호 전문분야 검사 또는 주제별 검사 계획은 환경보호 감사 계획 수립 및 승인 과정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농업농촌개발부(자원환경부)의 검사 계획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검사 계획과 중복되

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검사 또는 수시 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전문분야 검사 절차

a) 「환경보호법」 제160조 제1항에 규정된 장관 또는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장은 환경보호 전문분야 검사 결정을 발행한다.

b) 검사 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검사 결정 발행일
- 검사 결정의 법적 근거
- 검사 방식
- 검사 대상 개인 또는 조직(또는 가구 대표)의 성명 또는 명칭
- 검사 장소
- 검사단장 및 검사단원의 성명 및 직위
- 검사 결정을 발행한 자의 성명 및 직위
- 검사 내용
- 검사 기간

전문적·기술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 검정, 관측, 측정 및 환경 시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c) 검사단 구성

검사단은 다음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검사 결정을 발행한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 필요한 경우 전문가
- 검사 지역 협력 기관 대표
- 환경범죄 예방·단속 경찰 대표
- 검사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기관 대표

관련 기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담당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d) 검사 내용

전문분야 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보호 법령 준수 여부 검사
- 환경범죄 관련 위법행위 징후 확인
- 범죄 신고, 제보 및 환경범죄 관련 위반 신고 조사

e) 검사 기간

- 부처 또는 부처급 기관 검사: 최대 15일

(복잡한 경우 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 성급 인민위원회 전문기관 검사: 최대 10일

(복잡한 경우 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

- 읍·면·동급 인민위원회 전문기관 검사: 최대 7일

(복잡한 경우 1회에 한해 3일 연장 가능)

검사 기간은 검사 결정 공표일부터 현장 검사 종료일까지로 하며 환경 시료 분석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f) 검사 결정은 규정에 따라 검사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 없는 수시 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g) 수시 검사 시 조치

검사단장은 검사 결정을 제시한 후 다음 구역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

- 폐기물 발생 구역
- 폐수·배출가스 수집 및 처리 시설
- 배출 지점
- 기타 검사 결정 범위 내 구역

검사 대상 조직, 가구 또는 개인은 즉시 대표자를 출석시켜 검사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검사단장은公安 또는 읍·면·동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현장 접근 및 사건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조직·가구·개인의 법정 대표자는 사건 기록, 업무 기록 및 환경 시료 채취 기록에 서명할 책임이 있다.

대표자가 없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읍·면·동급 인민위원회 또는公安 대표가 입회인으로 기록에 서명한다.

h) 검사 활동은 검사 기록 또는 조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검사단장 또는 위임받은 부단장과 검사 대상 조직의 법정 대표자 또는 개인이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날인한다.

i) 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단장은 수시 감사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k) 사전 통보 없는 수시 검사 이전에는 검사단 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조직 또는 개인이 수시 검사 결정 관련 정보를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검사 결과 처리

a) 검사 과정에서 환경보호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행정위반 조서를 작성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b) 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또는 환경 시료 분석 결과 확인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c) 검사 결과 통보는 동일급 환경보호 전문기관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국방·안보 분야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6. 국방부 장관 및公安부 장관은 국방·안보 분야 국가 기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보호 검사 절차의 특별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 제168조 제14항 d호의 개정 및 보완

“d) 현재 가동 중인 시설 또는 건설 중이나 아직 운영 전인 투자 프로젝트 중, 환경허가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나 기존의 부문별 환경 인허가나 통합 환경허가증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환경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환경허가증 발급 제안 보고서의 서식은 농업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부록 II, III, IV, XXV, XXVI, XXVII, XXVIII, XXXIII의 교체**

(기존 시행령의 주요 서식 및 리스트가 담긴 부록들을 새 버전으로 교체함)

**제36조. 일부 규정의 대체 및 폐지**

다음 규정은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정부 시행령 제08/2022/NĐ-CP(2022년 1월 10일)」 및 「시행령 제05/2025/NĐ-CP(2025년 1월 6일)」의 일부 규정을 대체하거나 폐지한다.

1. 다음의 목, 항, 조 및 단어-문구를 폐지한다.

a) 다음 규정을 폐지한다.

제20조 제2항 b목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8항, 제12항, 제15항

제35조 제5항 b목

제43조 제3항 c목 및 h목, 제4항

제45조 제8항 a목 및 d목, 제9항 a목 및 c목

제49조 제4항

제63조 제2항

제6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1조 제2항

제89조 제4항

제91조 제4항 h목 및 제5항

제102조 제5항

제114조 제2항 d목

제168조 제14항 e목

b) 제156조 제2항 중 '기획투자부' 문구 삭제.

c) 부록 XVIII 중 '팩스(Fax)', '세무등록번호', '법적 대표자 성명 및 직위' 등 일부 기재란 삭제 (행정 간소화).

d) 부록 XIX에서 다음 문구를 삭제한다.

“(폐기물 처리 계약서 첨부)”

2. 일부 부록 폐지: 부록 VIII, IX, X, XI, XIII, XIV, XV, XXI를 폐지함.

3. 다음의 단어 및 문구를 대체한다.

a) 다음 조문에서

“군급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 “사급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으로 대체한다.

제5조 제2항 a목, b목

제9조 제1항 a목, b목

제19조 제5항 a목

제26조 제4항 e목

b) 제26조 제4항 e목에서

“군 간(liên huyện)” → “사 간(liên xã)”

으로 대체한다.

c) 다음 조문에서

“군급(cấp huyện)” → “사급(cấp xã)”

으로 대체한다.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6조 제4항 e목

제31조 제9항

제108조 제3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제1항 a목

제114조 제2항 d목

d) 제110조 제2항, 제164조 제3항 a호의 \*\*\*현(huyện)\*\*\*이라는 단어를 \*\*사(xã)\*\*\*라는 단어로 대체함.

đ)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5항 a호, 제113조 제2항의 \*\*\*현(huyện)\*\*\*이라는 단어를 \*\*\*성(tỉnh)\*\*\*이라는 단어로 대체함.

e)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8항,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2항 d호, 제16조 제2항 d호 및 제4항,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4항 c호 및 제7항,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2항·제6항 c-d호·제7항 d-e호·제8항 a-c호, 제26a조 제3항 b-d호 및 제4항, 제26조 제3항 b호, 제31조 제5항·제7항 b-d호, 제36조 제8항 a호 및 제9항, 제37조 제3항 a호 및 제12항,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 a-c호·제4항 및 제5항,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a호,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a호, 제44조 제2항 c호, 제45조 제10항 및 제11항, 제51조 제4항, 제52조 제4항, 제54조 제2항 b호 및 제3항 b호, 제58조 제2항 d호, 제65조 제4항 및 제6항,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69조 제1항 b호 및 제2항, 제70조 제5항, 제71조 제1항 b호 및 제4항, 제72조 제4항 및 제5항, 제74조 제3항 a-b호,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c호·제5항 d호 및 제8항, 제77조 제4항 c호,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a호, 제82조 제2항 및 제3항, 제83조 제5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및 제3항, 제86조 제2항, 제87조 제3항, 제88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91조 제3항 d호 및 제4항 d호, 제92조 제2항 및 제3항, 제93조 제5항, 제94조 제6항,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96조 제1항·제6항·제7항 및 제8항, 제97조 제4항 d호·제6항 a호·제7항 c호, 제98조 제5항 c호·제7항 a호·제8항 c호, 제102조 제6항, 제104조 제1항 및 제4항, 제105조 제1항 및 제6항,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및 제5항, 제114조 제2항 c호, 제121조 제3항, 제125조 제4항, 제127조 제4항 c호 및 제7항, 제133조 제3항, 제139조 제1항 및 제2항 d호, 제141조 제2항, 제144조 제5항, 제145조 제1항, 제146조 제3항, 제147조 제4항 및 제6항, 제148조 제1항 a호 및 제3항, 제149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및 제2항, 제160조 제2항 c호, 제164조 제2항 및 제3항 a호, 제

166조 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제3항 a호 및 제12항 a호, 제168조 제10항·제18항 및 제19항, 부록 XVIII, XX, XXIV, XXX, XXXII, XXXIV에 명시된 “자원환경부(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농업농촌개발부(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라는 문구를 “농업환경부(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라는 문구로 대체함.

g)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제111조 제1항 a호의 \*\*\*천재지변 예방 및 수색구조 지휘부\*\*\*라는 문구를 \*\*\*민방위 지휘부\*\*\*라는 문구로 대체함.

h) 제65조 제7항, 제75조 제2항, 제111조 제8항, 제160조 제2항 d호의 \*\*\*교통운수부\*\*\*라는 문구를 \*\*\*건설부\*\*\*라는 문구로 대체함.

i) 제134조 제3항 d호, 제136조 제4항, 제141조 제3항, 제144조 제5항 및 제6항, 제156조 제3항, 제157조 제4항, 제160조 제2항 k호, 부록 XXXIb의 \*\*\*기획투자부\*\*\*라는 문구를 \*\*\*재무부\*\*\*라는 문구로 대체함.

k) 제105조 제6항의 \*\*\*정보통신부\*\*\*라는 문구를 \*\*\*과학기술부\*\*\*라는 문구로 대체함.

l) 제168조 제10항, 제18항 및 제19항의 \*\*\*자원환경국(Sở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이라는 문구를 \*\*\*농업환경국(Sở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이라는 문구로 대체함.

m) 시행령 제08/2022/NĐ-CP호(제05/2025/NĐ-CP호에 의해 개정·보완됨) 제168조 제14항 c호 및 제15항 a호의 \*\*\*환경허가증 신청 제안 보고서 양식은 본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사례와 동일하게 수행한다\*\*\*라는 문구를 \*\*\*환경허가증 신청 제안 보고서 양식은 농업환경부 장관이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수행한다\*\*\*라는 문구로 대체함.

n) 시행령 제05/2025/NĐ-CP호 제5조 제2항·제5항 및 시행령 제08/2022/NĐ-CP호(제05/2025/NĐ-CP호에 의해 개정·보완됨)의 부록 XVI에 명시된 \*\*\*환경등록 면제\*\*\*라는 문구를 \*\*\*환경등록 대상 아님\*\*\*이라는 문구로 대체함.

o) 시행령 제08/2022/NĐ-CP호(제05/2025/NĐ-CP호에 의해 개정·보완됨) 제26조 제1항 b호의 \*\*\*관개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문구를 \*\*\*관개 분야 국가 관리 기관\*\*\*이라는 문구로 대체함.

### **제37조. 시행령 제05/2025/NĐ-CP호 제5조 제4항의 폐지**

**본 조항은 시행령 제05/2025/NĐ-CP호 제5조 제4항의 효력을 폐지함.**

### **제38조. 경과 조치**

1. 본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환경 관련 행정 절차 해결을 위해 국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에게 서류가 접수된 조직 및 개인(일부 예외 조항 제외)은 접수 당시의 법령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나 개인이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시행령 시행일 전에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았으나 본 시행령에 따라 환경허가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프로젝트 및 시설은, 발급된 허가증을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선택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주가 규정에 따라 환경등록을 수행하거나, 해당 시설이 환경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3. 성급(Province)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시행령 시행 전 농업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사 결과를 승인받았거나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은 프로젝트 중 다음의 경우에 대해 환경허가증의 발급, 변경, 재발급 권한을 갖는다.

a) 환경보호법 제41조 제3항(개정안 반영)에 규정된 대상

b) 본 시행령 제26a조에 규정된 대상과 유사한 투자 프로젝트/시설, 2개 이상의 성급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프로젝트, 또는 행정 관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4.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시행령 시행 전 성급 인민위원회, 현(District)급 인민위원회 등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 또는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례에 대해 허가증의 발급, 변경, 재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5. 하노이 시장(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수도법(Luật Thủ đô) 규정에 따라, 본 시행령 시행 전 농업환경부로부터 환경 인허가를 받았던 하노이시 투자 결정/승인 대상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허가증의 발급, 변경, 재발급을 수행한다.

6. 본 시행령 시행 전 환경허가증을 발급/재발급받은 검사단은 방류 전 처리 후 폐기물 관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실시한 경우는 제외)

7. 기존 법령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시설의 시운전(Vận hành thử nghiệm) 내용이 포함된 환경허가증을 받았으나, 본 시행령에 따라 시운전 대상에서 제외된 프로젝트는 시운전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시운전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 기관은 기존 시행령상의 관련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성급(Province) 환경 전문 기관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현(District)급 인민위원회로부터 환경허가증을 발급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사후 관리 책임을 진다.

9. 본 시행령 시행 전 환경등록을 완료했으나 본 시행령에 따라 환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프로젝트는 기존에 등록된 환경등록증을 선택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제39조. 효력 및 시행 책임

1. 본 시행령은 서명 및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2. 다음 규정을 폐지한다.

정부가 2025년 6월 12일에 공포한 시행령 제131/2025/NĐ-CP

(농업환경부 소관 국가관리 분야에서 지방정부 2단계 간 권한을 구분하는 규정)

- 제31조 제2항
- 제III장 제8절

3. 다음 규정을 폐지한다.

정부가 2025년 6월 12일에 공포한 시행령 제136/2025/NĐ-CP

(농업 및 환경 분야의 권한 위임 및 분권에 관한 규정)

-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 제45조 제2항
- 제46조 제6항
- 제XI장

4. 각 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조직·개인은 이 시행령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 권한 대행(결재)  
부총리

(서명)

쩨흥하 (Trần Hồng Hà)

[수신처 및 서명]

수신:

당 중앙비서국

총리 및 각 부총리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직속 기관

각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평의회(HĐND) 및 인민위원회(UBND)

당 중앙사무국 및 각 당 위원회

서기장실

국가주석실

국회 민족협의회 및 각 국회 위원회

국회사무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국가감사원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정치-사회단체 중앙기관

정부사무국(VPCP): 실장(장관급), 부실장, 총리 보좌관, 전자정부포털 총국장, 각 국·과 및 직속 단위, 관보 (Công báo)

보관: 사무처, 농업부서(2부)

부록 II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생산·경영·서비스 업종 목록  
(2026년 1월 29일 정부 시행령 제48/2026/NĐ-CP에 첨부)

TT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생산·경영·서비스 업종	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1)	(2)	(3)	(4)	(5)
1	유해 광물 및 금속 광물 선광·가공;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광물 가공	연간 원료 투입량 20만 톤 이상	연간 원료 투입량 20만 톤 미만	해당 없음
	유리 제조 (단, 전기·가스·DO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며 실리카(Si) 정제 공정이 없는 경우는 제외)	연간 생산량 20만 톤 이상	연간 생산량 5,000톤 ~ 20만 톤 미만	연간 생산량 5,000톤 미만
2	금속 제조 (단, 금속 반제품을 이용한 압연·인발 또는 주조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연간 생산량 300,000톤 이상	이상 연간 생산량 300,000톤 미만	없음
3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단, 펄프 생산 공정이 있거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sup>4</sup>	연간 생산량 50,000톤 이상	연간 생산량 5,000톤 ~ 50,000톤 미만	연간 생산량 5,000톤 미만
4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 (산업용 가스 제외) 화학 비료 제조 (단, 분쇄, 배합, 펠릿화, 표면처리(광택 처리), 건조, 냉각, 소분, 포장 공정 중 하나 또는 여러 공정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식물보호제(농약) 제조 (단, 배합, 소분, 포장 공정 중 하나 또는 여러 공정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연간 생산량 5,000톤 이상	연간 생산량 1,000톤 ~ 5,000톤 미만	연간 생산량 1,000톤 미만
5	직물·섬유·의류 제조 (단, 염색, 워싱/가공, 정련 공정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에 한함)	연간 50,000,000 m <sup>2</sup> 이상의 직물 생산 또는 섬유 생산의 경우 연간 10,000톤 이	연간 5,000,000 m <sup>2</sup> 이상 ~ 50,000,000 m <sup>2</sup> 미만의 직물 생산 또는	연간 5,000,000 m <sup>2</sup> 미만의 직물 생산 또는 섬유 생산의 경우 연간 1,000톤 미만

		상의 제품 생산	섬유 생산의 경우 연간 1,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의 제품 생산	의 제품 생산
6	피혁 제조 및 제혁 (단, 제혁(무두질) 공정이 포 함된 경우에 한함)	연간 생산량 10,000톤 이상	연간 생산량 1,000 톤 ~ 10,000톤 미 만	연간 생산량 1,000 톤 미만
7	원유 채굴 및 천연가스 채굴	규모 무관 전체 대 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유 및 석유화학	연간 생산량 100 만 톤 이상	연간 생산량 100 만 톤 미만	해당 없음
8	석탄 화력발전 <sup>12</sup>	600 MW 이상	600 MW 미만	없음
	코크스(Than cốc) 제조	연간 생산량 10만 톤 이	연간 생산량 10만 톤 미만	없음
	석탄 가스(석탄 가스화) 제조	시간당 가스 생산 량50,000 m <sup>3</sup> 이상	시간당 가스 생산 량50,000 m <sup>3</sup> 미만	없음
	<b>제2군 (Mức II)</b>			
9	생활폐기물 및 일반산업폐기 물 재활용·처리 서비스	일일 처리량 500 톤 이상	일일 처리량 500 톤 미만	해당 없음
	유해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서비스 중고 선박 해체 생산 원료용 외국산 스크랩 (폐기물) 수입	전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금속 도금 공정이 포함된 제 품 제조; 화학물질을 이용한 금속 표면 세척 공정이 포함 된 도금 (단, 본 표의 제17번 항목(선 박 해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연간 제품 생산량 10,000톤 이상	연간 제품 생산량 1,000톤 ~ 10,000 톤 미만	연간 제품 생산량 1,000톤 미만
11	전자 및 축전자 제조 (단, 전극/극판 제조, 전해질 제조·조제, 배터리 셀 생산 공 정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	연간 제품 600톤 이상 또는 연간 200,000 kWh 이 상	연간 제품 600톤 미만 또는 연간 200,000 kWh 미 만	해당 없음

	에 한함)			
12	시멘트 제조 (단, 클링커 제조 공정이 포함 된 경우에 한함)	연간 생산량 120 만 톤 이상	연간 생산량 120 만 톤 미만	해당 없음
	<b>Mức III(제3군)</b>			
13	천연고무(라텍스) 가공	연간 1.5만 톤이상	연간 6천~ 1.5만 톤미만	연간 6천 톤미만
14	카사바 전분, MSG(미원) 제조	연간 1만 톤이상	연간 500 ~ 1만 톤미만	연간 5 ~ 500 톤 미만
	맥주, 탄산음료, 주류 제조 (단, 주정 혼합/희석 주류는 제외)	연간 3천만 리터 이상	연간 100만~ 3천 만 리터미만	연간 5만~ 100만 리터미만
	공업용 알코올 제조 <sup>25</sup>	연간 200만 리터 이상	연간 50만~ 200만 리터미만	연간 50만 리터미 만
15	사탕수수 원료 설탕 제조 <sup>26</sup>	연간 10만 톤이상	연간 5천~ 10만 톤미만	연간 5 ~ 5천 톤 미만
16	수산물 가공 <sup>27</sup>	연간 2만 톤이상	연간 1천~ 2만 톤 미만	연간 100 ~ 1천 톤미만
	가축 및 가금류 도축시설	일일 가축1천 마 리또는  가금류1만 마리아 상	일일 가축100~1천 마리또는  가금류1천~1만 마 리	일일 가축20~100 마리또는  가금류200~1천 마 리
	가축 사육 (축산)	3,000 축산단위 (LU)이상	300 ~ 3,000 LU미 만	10 ~ 300 LU미만
17	전자제품, 컴퓨터 및 광학기 기 제조  (단, 도금, 도장/화학 코팅, 유 독화학물질 세척, 또는 수입 금지 중고IT 제품의 위탁 가 공/수리 공정 중 하나라도 포 함된 경우에 한함)	연간 5,000만 개 이상	연간 10만~ 5,000 만 개 미만	연간 10만 개 미 만

	<b>전기장비(기기) 제조</b>  (단, 도금, 도장/화학 코팅, 유독화학물질 세척 공정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에 한함)	연간 5만 톤 이상	연간 100 ~ 5만 톤 미만	연간 100 톤 미만
--	---	------------	------------------	-------------

비고 (Ghi chú)

베트남 경제산업분류 코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본 부록 제2열에 규정된 제조·영업·서비스 유형은 해당 변경된 새로운 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적용한다.

1. 코드 B: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광산물 관련 법규에 따른 유해 광산물; 화학 물질 관련 법규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
2. 코드 23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3. 코드 24: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4. 코드 17: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5. 코드 20112, 20113, 20119: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제외).
6. 코드 2012: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유기 비료 제조업 제외).
7. 코드 202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식물 보호 및 검역 관련 법규에 따른 생물학적 식물 보호제 제조업 제외).
8. 코드 13: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섬유 제품 제조업).
9. 코드 15: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코드 06: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1. 코드 429, 20 (정제유 기반의 석유 화학 제품 제조), 192: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12. 코드 3511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원자력 발전).
13. 코드 19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4. 코드 3520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가스 제조 및 배급).
15. 코드 38: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환경 보호법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및 일반 산업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서비스 포함).
16. 코드 38: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환경 보호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유해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서비스 포함).
17. 코드 3830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금속 재생 재료 가공업).
18. 수입 고철/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상의 모든 제조 업종 코드.
19. 금속 도금 공정이 포함된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상의 모든 제조 업종 코드 (화학 물질을 이용한 금속 표면 세척 공정이 포함된 도금 포함; 단, 본 목록 17번 항목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20. 코드 27200, 261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축전지 및 전자 부품 제조업).
21. 코드 2394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클린커(clinker) 생산 공정 포함).
22. 코드 0125, 22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천연고무 라텍스 가공 활동 포함).
23. 코드 1062: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카사바 전분 및 조미료(L-글루타민산나트륨) 제조

활동 포함).

24. 코드 1101, 1102, 1103: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증류주, 와인, 맥주 제조업).
25. 공업용 알코올 제조 활동이 포함된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상의 모든 제조 업종 코드.
26. 코드 1072: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설탕 제조업).
27. 코드 1020: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단순 보관 제외 - 수산물 가공 및 보존업).
28. 코드 10101: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가축 도축업).
29. 코드 014 (코드 1046 제외):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사육 시점의 최대 사육 능력(용량) 기준.
30. 코드 26: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도금, 도장/화학 코팅, 독성 화학 물질을 이용한 세척 공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31. 코드 27: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 (도금, 도장/화학 코팅, 독성 화학 물질을 이용한 세척 공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부록 III

환경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도가 높은 제1그룹 투자  
프로젝트 목록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시행령 제48/2026/ND-CP호 부속)

STT	투자 프로젝트	규모·용량 / 환경 민감도 수준 / 천연자원 개발 허가 권한
(1)	(2)	(3)
I	환경보호법 제28조 제3항 a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1	건설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국회 또는 총리가 투자정책을 결정하 거나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 (단, 다음 프로젝트는 제외) 항공 여객 운송 사업 투자 프로 젝트 베팅 및 카지노 사업 투자 프로 젝트 단, 외국인 대상 유료 전자게임 사업은 제외 네트워크 인프라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사업 투자 프로젝트 조림(산림 조성), 출판, 언론 사 업 투자 프로젝트 → 투자법 규정에 따름	모두(전체)
2	지정폐기물(유해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서비스 프로젝트; 중고 선박 해체 프로젝트; 수입 폐기 물/고철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 조 프로젝트; 원자로 및 원자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	모두(전체)
3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 제3 열에 규정된 대규모 생산·사업· 서비스 유형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모두(전체)
II	환경보호법 제28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4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 제4 열에 규정된 중간 규모의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생산·사업·서 비스 유형에 속하는 프로젝트	본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규정 된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경우.
5	공공투자 및 건설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A그룹 프로젝트(대 규모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건설 구성요소가 있는 프로젝트 단,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생산·	본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규정 된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경우.

	사업·서비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	
III.	환경보호법 제28조 제3항 c호 및 d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6	a) 토지 또는 수면(수역)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단, 임업 법령에 따른 조림/임업 프로젝트, 수산법에 따른 집약적·준집약적 방식이 아닌 양식 프로젝트는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총 프로젝트 면적 300ha 이상 b) 면적이 50ha 이상 300ha 미만인면서 본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경우 (단, 본 부록 7, 8번 항목 제외)
	b) 집중 생산·경영·서비스 구역(공단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	모두(전체)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다음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li> <li>• 자연보호구역</li> <li>• 특수용도림</li> <li>• 보호림</li> <li>• 자연림이 있는 토지</li> <li>• 수산자원 보호구역</li> <li>• 중요 습지</li> <li>• 생물권 보전지역</li> <li>• 세계 자연유산</li> </ul> (단, 산림 관리·보호, 자연 보전, 산림 화재 예방, 조림만을 목적으로 승인된 프로젝트는 제외)	총 면적이 50ha 이상 300ha 미만인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자연보호구역, 특수용도림, 수산자원보호구역 사용 b)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 구역 사용, 또는 세계자연유산·생물권 보전지역·자연보호구역의 완충 구역 0.5ha 이상 사용 c) 중요 습지 0.2ha 이상 사용 d) 천연림 0.2ha 이상 사용
	b) 상기 보호구역 및 산림의 토지·수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	총 면적이 50ha 이상 300ha 미만인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자연보호구역, 특수용도림,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 구역의 용도 변경 b) 세계자연유산·생물권 보전지역·자연보호구역 완충 구역의 토지 0.5ha 이상 용도 변경 (수면의 경우 핵심 구역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포함) c) 중요 습지, 또는 핵심 구역과 연결된 완충 구역의 수면 용도 변경 d) 천연림 0.1ha 이상 또는 보안림 0.1ha 이상 용도 변경
8	문화유산법에 따라 등급이 지정	총 프로젝트 면적 50ha 이상

	된 세계유산구역, 역사·문화 유적지, 국가 및 특별 국가급 명승지의 토지 및 수면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단, 유적 보존·복원·수리, 위생·관리, 교통안전 유지보수 프로젝트는 제외)	300ha 미만
9	a) 해역(海域)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단, 비집약적 수산 양식은 제외) b) 해양 투기(Dumping at sea)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	농업환경부의 해역 할당 권한에 속하며, 사용 면적이 10ha 이상인 경우 농업환경부의 해양 투기 허가 권한에 속하는 경우
IV.	환경보호법 제28조 제3항 d호 및 e호에 규정된 프로젝트	
10	광물 채굴 프로젝트 (단, 단순 건설용 골재 회수 제외); 수자원 채취 및 이용 프로젝트	농업환경부의 광물 채굴 또는 수자원 이용 허가 권한에 속하는 경우
11	주민 이주 및 재정착이 필요한 프로젝트	산간 지역 1만 명 이상, 또는 기타 지역 2만 명 이상 규모
V	확장 투자 프로젝트	
12	현재 진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투자 프로젝트, 생산·사업·서비스 집중단지 또는 산업클러스터의 규모 확장 또는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확장 또는 생산능력 증대는 기존 진행 중인 프로젝트 + 운영 중인 시설 + 확장 또는 증설 부분을 모두 합산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프로젝트와 동등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다음 규정과 같은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시행령 제27조 제2항 d호 또는 제27조 제6항 b, c, d, d, k, l, m호 b) 다음과 같은 경우 생산·사업·서비스 규모 또는 생산능력이 증가하는 경우 본 시행령 제27조 제3항 a호 또는 c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30% 이상 규모 또는 용량 증가하여 본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VI	위에서 열거된 각 항목과 동등한 성격의 구성 요소를 하나라도 포함하는 프로젝트	

부록 IV

환경보호법 제28조 제4항에 규정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제2군 투자 프로젝트 목록

(단,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I에 규정된 프로젝트는 제외)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시행령 제48/2026/NĐ-CP에 첨부)

STT	투자 프로젝트	규모, 용량 / 환경 민감도 / 천연자원 채굴 허가 권한
(1)	(2)	(3)
I	환경보호법 제28조 제4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1	이 시행령 부록 II 제4열에 규정된 중간 규모의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생산·사업·서비스 유형 프로젝트	모두(전체)
2	이 시행령 부록 II 제5열에 규정된 소규모 환경오염 위험 생산·사업·서비스 프로젝트	
3	공공투자법 및 건설법 기준에 따른 B그룹 또는 C그룹 프로젝트로서 건설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환경 오염 위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	본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경우
II	환경보호법 제28조 제4항 다(c)호 및 마(d)호에 규정된 프로젝트	
4	a) 토지 또는 수면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단, 산림법에 따른 산림 개발 프로젝트, 수산법에 따른 비집약 양식 프로젝트 다음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총 프로젝트 면적 50ha 이상 300ha 미만 b) 면적 50ha 미만인면서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경우 (단, 본 부록 5, 6번 제외)
	b)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 프로젝트	모두(전체)
5	자연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중요 습지, 특수 용도림, 보안림, 천연림의 토지 또는 수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 (단, 산림 관리·보호, 보전, 화재 예방, 조림만을 목적으로 승인된 프로젝트는 제외)	총 프로젝트 면적이 50ha 미만 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자연보호구역, 특수용도림,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 구역의 용도 변경 b) 세계유산·생물권 보전지역·자연보호구역 완충 구역의 토지 0.5ha 이상 용도 변경, 또는 핵심 구역과 수면이 연결되지 않은 완충 구역의 수면 0.5ha 이상 용도 변경 c) 중요 습지 또는 핵심 구역과

		수면이 연결된 완충 구역의 용도 변경 d) 천연림 0.1ha 이상 또는 보안림 0.1ha 이상 용도 변경
6	문화유산법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 세계유산구역, 역사·문화 유적지, 국가 및 특별 국가급 명승지의 토지 및 수면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단, 유적 보존·복원, 위생·관리, 교통안전 유지보수 프로젝트는 제외)	총 프로젝트 면적 50ha 미만
7	a) 해역(海域)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비집약적 수산 양식 제외)	성(省)급 인민위원회의 해역 할당 권한에 속하며, 사용 면적 10ha 이상
	b) 해양 투기(Dumping)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	성(省)급 인민위원회의 해양 투기 허가 권한에 속하는 경우
	c) 공유수면 매립(Land reclamation)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	성(省)급 인민위원회의 매립 목적 해역 할당 권한에 속하는 경우
III	환경보호법 제28조 제4항 라(d)호 및 바(e)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8	광물 채굴 프로젝트 (단, 프로젝트 지역에서 일반 건설자재 회수를 위한 채굴 또는 준설과 함께 이루어지는 광물 회수 사업 제외)	성(省)급 인민위원회의 광물 채굴 또는 수자원 이용 허가 권한에 속하는 경우 (단, 지하수 500m <sup>3</sup> /일 미만 또는 지표수 50,000m <sup>3</sup> /일 미만 채취는 제외)
9	주민 이주 및 재정착이 필요한 프로젝트	산간 지역 1,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기타 지역 2,000명 이상 20,000명 미만
IV.	확장 투자 프로젝트	
10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 (운영 전 단계) 또는 운영 중인 시설·산업클러스터의 규모 확장 또는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규모 확장 또는 생산능력 증대는 기존 운영 시설 + 진행 중인 프로젝트 + 확장·증설 부분을 모두 합산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프로젝트와 동등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다음 경우와 같은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본 시행령 제27조 제2항 d호 또는 제27조 제6항 b, c, d, d, k, l, m호 b) 다음 경우와 같이 생산·사업·서비스 규모 또는 생산능력이

		증가한 경우 본 시행령 제27조 제3항 a호 또는 c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30% 이상 규모 또는 생산능력 증가하여 본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V	상기 언급된 각 번호의 항목 중 하나와 대등한 항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부록 XXV

환경측정 서비스 활동 자격 증명서 발급 신청서 양식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시행령 제48/2026/NĐ-CP호 부속)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 .....년 .....월 .....일

수신: 농업환경부

1. 조직명: .....

2. 대표자: ..... 직위: .....

3. 주소: .....

4.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

5. 인증 신청 범위 및 환경 구성 요소: a) 수질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지표수:

지하수:

우수(빗물):

해수:

폐수:

기타: .....

b) 대기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주변 대기:

배출 가스:

기타: .....

c) 토양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d) 저질(퇴적물)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e) 폐기물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f) 슬러지(오니)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g)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함유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6. 증명서 신청 구비 서류 목록:

.....  
.....

...(1)...는 본 신청서류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보증하며, 환경보호 관련 법규 및 인증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는 농업환경부가 규정한 환경 모니터링 절차 및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에 맞는 품질보증(QA) 및 품질관리(QC) 프로그램을 구축·운영·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인증 및 환경 모니터링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베트남 법률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농업환경부가 검토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조직명)의 법적 대표자  
(서명 및 성명 기재, 직위 날인)

비고: (1)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조직의 명칭.

부록 XXVI

환경측정 서비스 활동 자격 증명서 발급·조정 신청 조직의 역량 프로파일 양식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시행령 제48/2026/NĐ-CP호 부속)

(1) (조직명 입력)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 20...년 ...월 ...일

환경측정 서비스 활동 자격 증명 신청 조직의 역량 프로파일

A.

일반 정보

I. 인증 신청 조직명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

II. 상급 기관 / 주관 기관 (해당 시)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

III. 법적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IV. 업무 담당자 (연락 담당자)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첨부 서류 참고: 조직의 기능과 임무를 규정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문, 사업자 등록증 또는 투자 등록증(원본 또는 공증 사본); 외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설립 결정문을 첨부해야 함.

B.

역량 정보

I. 현장 측정(Field Monitoring) 분야

1. 수행 샘플 수 (이미 운영 중인 단위에 한함)

수행 샘플 수 (최근 5개년 평균): ... 건/년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각 환경 구성 요소별로 나열)

샘플 출처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내부  (비중: %)

외부 고객  (비중: %)

2. 인력

현장 측정 수행 인력 명단:

(이후 인적 사항, 전공, 경력 등을 기재하는 표가 이어짐)

TT순번	성명	출생연도	성별	직위 (조직 내)	학위 및 전공 분야	해당 분야 경력 연수

--	--	--	--	--	--	--

TT순번	장비명	주요사항기술	사용목적	일련번호	제조사/제조국	사용시작시기	점검주기	교정주기	교정기관	교정유효기간

장비 보관실 조건

온도: ..... °C ± ..... °C

습도: ..... % ± ..... %

기타 조건: .....

4. 현장 샘플 채취, 측정 및 분석 항목과 방법

a) 현장 측정 및 분석 항목

순번	측정 항목명(과라미터)	환경 구성 요소	사용 방법/시험법 번호	측정 범위

b) 시료 채취 및 보관

	측정 항목 / 시료 종류	환경 구성 요소	사용 방법 / 시험법 번호

5. 사무실 및 작업 공간 조건

사무소 보유 여부:

있음  없음

총 면적: ..... m<sup>2</sup>

세부 구성:

사무실: ..... m<sup>2</sup>

현장 모니터링 출발 전 준비실: ..... m<sup>2</sup>

장비 및 기구 보관실: ..... m<sup>2</sup>

데이터 처리 및 보관실: ..... m<sup>2</sup>

보조 시설: ..... m<sup>2</sup>

II. 환경 분석 분야

1. 수행 샘플 수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분석 샘플 수:

..... 샘플 / 년

(인증 신청 환경 매체별로 구분하여 기재)

샘플 출처

(해당 항목 체크)

내부  비율: ..... %

외부 고객  비율: ..... %

2. 인력

- 실험실 환경 분석 수행 인력 목록

순번	성명	출생년도	성별	직위	학력 및 전공	해당 근무 연수	분야 경력

### 3. 시설 및 환경

실험실 평면도와 환경 분석 장비의 위치를 포함한 도면 제출

실험실 환경 조건

온도: ..... °C ± ..... °C

습도: ..... % ± ..... %

### 4. 장비 목록 (현재 보유 장비)

순번	장비명	주요 기술 사양	사용 목적	일련 번호	제조사 / 제조국	사용 개시일	점검 빈도	교정 빈도	교정기관	교정 유효기간

### 5. 시료 처리 및 분석 항목과 방법

순번	항목명	시료유형	적용방법명칭/번호	검출한계/측정범위	측정불확도

### 6. 사무소 및 작업 공간 조건

사무소 보유 여부:

있음  없음

총 면적: ..... m<sup>2</sup>

세부 구성

사무실: ..... m<sup>2</sup>

시료 처리 및 분석실: ..... m<sup>2</sup>

장비 및 기구 보관실: ..... m<sup>2</sup>

시료 보관 창고: ..... m<sup>2</sup>

화학물질 보관 창고: ..... m<sup>2</sup>

저울 설치실: ..... m<sup>2</sup>

보조 시설: ..... m<sup>2</sup>

서류 작성자

(서명 및 성명 기재)

...(1)...의 법적 대표자  
(서명, 성명 기재, 직위 기재 및 직인)

주석:

(1)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기관명

부록 XXVII

환경측정 서비스 활동 자격 증명서 내용 조정 신청서 양식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시행령 제48/2026/ND-CP호 부속)

(1) (조직명 입력)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 20...년 ...월 ...일

환경측정 서비스 활동 자격 증명서 내용 변경 신청서

수신: 농업환경부

1. 조직명: .....

2. 대표자: ..... 직위: .....

3. 주소: .....

4. 전화번호: ..... 팩스: .....이메일 주소: .....

5. 기존 환경측정 서비스 활동 자격 증명서 번호: ..... 발급일: .....년 .....월 .....일

6. 기존 인증 범위 및 환경 구성 요소:

a) 수질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지표수:  / 지하수:  / 우수(빗물):  / 해수:  / 폐수:  / 기타: .....

b) 대기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주변 대기:  / 배출 가스:  / 기타: .....

c) 토양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d) 저질(퇴적물)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e) 폐기물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f) 슬러지(오니)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g)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함유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부록 별첨)

7. 내용 조정(변경)을 신청하는 범위 및 환경 구성 요소: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체크 및 상세 내용 기재)

a) 수질:  / b) 대기:  / c) 토양:  / d) 저질:  / e) 폐기물:  / f) 슬러지:  / g) POPs 관련:

8. 기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9. 환경측정 서비스 활동 자격 증명서 내용 조정 신청 구비 서류 목록:

.....

(1) (조직명)은 본 서류의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서약하며, 환경 보호 관련 법령 및 인증에 관한 모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조직은 농업환경부가 규정한 환경측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모든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측정 활동 범위에 적합한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이행·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인증 및 환경측정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베트남 법령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농업환경부의 검토 및 증명서 내용 조정을 요청합니다.

...(1)...의 법적 대표자

(서명 및 성명 기재, 직위 날인)

비고: (1) 증명서 조정을 신청하는 조직의 명칭 기재.

부록 XXVIII

자동 및 연속 폐수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경영·서비스 구역 및 산업 클러스터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시행령 제48/2026/NĐ-CP호 부속)

순번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경영·서비스 구역 및 산업 클러스터 유형	자동 및 연속 폐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측정 항목	유량(용량) 기준	
(1)	(2)	(3)	(4)	(5)
1	집중 생산·경영·서비스 구역, 산업 클러스터; 경제 구역 내 집중 폐수 처리 시스템 (있는 경우)	유량 (유입 및 유출), pH, 온도, TSS, COD 또는 TOC, 암모니아	500 m <sup>3</sup> /일(24시간) 이상	200 m <sup>3</sup> /일 이상 ~ 500 m <sup>3</sup> /일 미만
2	본 시행령 부록 II에 규정된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생산, 경영, 서비스 유형의 프로젝트 및 시설	유량 (유입 및 유출), pH, 온도, TSS, COD 또는 TOC, 암모니아	500 m <sup>3</sup> /일 이상	200 m <sup>3</sup> /일 이상 ~ 500 m <sup>3</sup> /일 미만
3	본 시행령 부록 II에 규정된 환경 오염 위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 및 시설	유량 (유입 및 유출), pH, 온도, TSS, COD 또는 TOC, 암모니아	1,000 m <sup>3</sup> /일 이상	500 m <sup>3</sup> /일 이상 ~ 1,000 m <sup>3</sup> /일 미만

부록 XXXIII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서비스 보고서 양식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시행령 제48/2026/NĐ-CP에 첨부)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장소, .....년 .....월 .....일

수신: 농업환경부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 규정한 정부 시행령 제 .../NĐ-CP에 근거하여,

...(2)... 제품·서비스에 대한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에 근거하여,

(1) (조직/개인 명칭)은 (1)의 (2) (제품/서비스명)이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농업환경부에 요청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업 일반 정보 및 생산·사업 현황**

1. 조직 또는 개인 명칭

주소: .....

법적 대표자: .....

전화: ..... Fax: .....

Email: .....

웹사이트 (있는 경우): .....

담당자: .....

2. 기업 등록 번호 정보: 번호, 발급일 및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업종 정보.

3.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 명칭: .....

상표(브랜드): .....

생산량

(제품 친환경 인증 신청 시)

평균 ..... 톤 / 년

(최근 생산·사업 보고서 첨부)

4. 현재 인력

상시 근무 직원 수

계절·임시 근로자

(연간 총 근무개월 수 기준)

5. 제품/서비스 특성 설명:

5.1. 기술적 특성 및 생산 공정 설명 (제품의 경우):

a)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료·연료의 종류 및 할당량 (사용된 각 원료, 연료, 화학 물질의 상표명, 화학식(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

b) 생산 기술 공정:

가동 중인 기계·장비 목록(명칭, 제조처, 제조 연도, 장비 상태(신규 또는 노후 정도) 등 기재).

생산/가동 기술 공정 요약 설명 및 블록 다이어그램(순서도) 첨부.

5.2. 서비스 활동 설명:

서비스 목적 설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부자재, 장비 사용 및 에너지 소비(특성, 소비율, 폐기 시 처리 방식) 설명.

서비스 제공 절차 설명.

5.3. 회수 및 재활용 계획 설명 (두께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비닐봉투 등록 시):

폐기 후 제품 회수 계획: 발생 폐기물 감소 방안, 수거 및 처리 방법, 단위 시간당 예상 회수량 등 설명.

재활용 처리 절차, 재활용량, 기술 라인, 투입 원료 및 재활용 제품의 기술적 특성 설명.

외부 업체와 협력하여 회수·재활용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서/기본계약서 및 협력 업체 정보(일반 정보, 법적 절차, 역량 등) 첨부.

회수·재활용 및 친환경 비닐봉투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보호 방안.

친환경 비닐봉투 생산을 위한 회수·재활용 활동 자원 투자 계획(인력, 장비, 예상 비용 등).

B. 환경보호 법규 준수 평가 결과

1. 환경 관련 절차 이행:

이행 완료된 환경 관련 서류 및 절차 나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보호 약약서, 환경보호 계획, 상세/간소 환경보호안 등; 승인 결정 번호, 확인서 번호 및 관련 기관 인증 정보.

환경 관련 행정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그 형태 및 수준.

환경 보호 시설 및 조치 설명:

생산(제품) 또는 가동(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폐기물(폐수, 배출가스, 일반 고형 폐기물, 지정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조치 설명:

폐기물 발생원 및 발생량.

폐기물 처리/관리 시설 및 조치 (처리 공정 흐름도 및 관련 기술 자료 설명).

지정폐기물(유해 폐기물) 관리 현황: 배출자 등록증 정보(발급처, 날짜), 배출자 번호, 최신 정기 보고서, 폐기물 처리 계약 체결 업체 정보 등.

정기 환경 모니터링(측정) 빈도 및 기업의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이행 정보.

(주: 국가 기관의 현장 점검이나 위원회 심사 시 기업 등록 번호, 환경 절차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원본 서류를 제시하여 대조할 수 있어야 함)

C. 제품의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 충족 자체 평가 결과

1. 제품/서비스의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 충족 자체 평가 결과

순번	공표된 기준(평가 기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시험 결과	비고
1	기준 1		시험 결과 요약 설명 (있는 경우)	
2	기준 2		시험 결과 요약 설명 (있는 경우)	
3	기준 n		시험 결과 요약 설명 (있는 경우)	

2. 기타 정보 (해당 시)

친환경 자원, 원료, 연료 및 에너지의 사용:

기업이 이미 적용 중이거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안 또는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해당 방안/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자가 평가를 수행합니다.

환경 사고 및 화재·폭발 예방, 대응을 위한 시설, 조치 및 계획:

승인된 시나리오 또는 방안에 따라 사고 및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행 현황을 직접 기술합니다. 기업 내 화재 예방 및 소방 업무와 관련된 진척 사항,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여 기술합니다 (이행 일정, 예상 비용, 이행 책임 등을 명확히 기술).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1)...\*\*은/는 농업환경부에 ...(2)... 제품/서비스에 대한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을 요청합니다.

...(1)...

(서명, 성명 및 직위 기재, 날인(있는 경우))

비고:

(1)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을 신청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명칭.

(2)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